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제2호



2011.12

세법연구센터

KIPF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제2호

2011. 12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이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제 1 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I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세제 개정 동향 11

1. 프랑스	11
2. 영국	14
3. 독일	17
4. 이탈리아	19
5. 스페인	23
6. 포르투갈	27
7. 그리스	30
8. 네덜란드	34
9. 스위스	36
10. 미국	38
11. 캐나다	41
12. 일본	44
13. 중국	47
14. 호주	51

II 미국의 버핏룰과 그와 관련된 논의 53

III OECD의 VAT 중립성 지침 발표 59

제 2 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캐나다 65

1. 미국 65
 - 가. 역외 은닉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 방안 65
 - 나. 2011년 미국 일자리법 개정안 발표 68
 - 다. 미국의 경제성장 및 재정적자 감축 방안(The President's Plan for Economic Growth and Deficit Reduction) 70
 - 라. 미국 2012년 물가인상 조정 내역 발표 75
2. 캐나다 77
 - 가. 캐나다 재무부의 경제성장 및 고용촉진법 발표 77

II 유럽 80

1. 그리스 80
 - 가. 그리스 긴축정책 발표 80
2. 네덜란드 81
 - 가. 네덜란드의 회사 차량의 개인적 공급에 관한 VAT 규정 개정 81
 - 나. 네덜란드의 외국신탁·협회에 대한 조세사면(tax amnesty) 실시 82
3. 노르웨이 83
 - 가. 노르웨이 2011년 수정 예산안 83

4. 러시아	85
가. 러시아 이전가격세제 개정법 발표	85
5. 루마니아	89
가. 루마니아의 세법 개정	89
6. 스위스	91
가. 독일-스위스 및 영국-스위스의 역외탈세 방지 조세협약 체결	91
7. 스웨덴	94
가. 스웨덴 2012 예산안 의회 제출	94
8. 스페인	97
가. 스페인 개정세법 발표	97
9. 영국	100
가. 영국의 부가가치세 사업자 자진 등록 프로그램	100
10. 이탈리아	102
가. 이탈리아의 긴축패키지 도입	102
11. 포르투갈	105
가. 포르투갈 2012 예산안 의회 제출	105
12. 프랑스	110
가. 프랑스의 구글세 도입 계획 철회	110
나. 프랑스 의회의 수정예산안 승인	111
다. 프랑스의 2011년 추가경정예산 승인	115
라. 프랑스 하원의 부가세(surtax) 승인	117

Ⅱ 아시아 119

1. 대만	119
가. 대만의 과소자본세제 개정	119
2. 뉴질랜드	120
가. 뉴질랜드의 세법 개정	120
3. 싱가포르	123
가. 싱가포르의 이슬람금융에 대한 세법 개정	123
4. 일본	125
가. 일본의 세제개정 조치	125
나. 일본의 2012년 세법개정대강	128
5. 중국	138
가. 중국의 개인소득세제 개정조치	138
6. 호주	141
가. 호주의 탄소세 관련 동향	141

제1부

표 목차

〈표 I-1〉 2008~2012년 프랑스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11
〈표 I-2〉 2011년 프랑스의 소득세율 체계	12
〈표 I-3〉 프랑스 장기보유공제율 개정내역	13
〈표 I-4〉 2008~2012년 영국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14
〈표 I-5〉 영국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15
〈표 I-6〉 영국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16
〈표 I-7〉 영국의 법인세율 변화	17
〈표 I-8〉 2008~2012년 독일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17
〈표 I-9〉 독일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18
〈표 I-10〉 2008~2012년 이탈리아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19
〈표 I-11〉 2011년 이탈리아의 소득세율 체계	20
〈표 I-12〉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21
〈표 I-13〉 이탈리아 로빈세 개정내용	23
〈표 I-14〉 2008~2012년 스페인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23
〈표 I-15〉 스페인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24
〈표 I-16〉 스페인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25
〈표 I-17〉 포르투갈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27
〈표 I-18〉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29
〈표 I-19〉 2008~2010년 그리스의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30
〈표 I-20〉 그리스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31
〈표 I-21〉 그리스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32
〈표 I-22〉 그리스의 법인세율 변화	33
〈표 I-23〉 2008~2012년 네덜란드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34
〈표 I-24〉 2011년 네덜란드의 소득세율 체계	34
〈표 I-25〉 2011년 스위스의 소득세율	37
〈표 I-26〉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38

〈표 I-27〉 2008~2012년 미국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39
〈표 I-28〉 미국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40
〈표 I-29〉 미국의 법인세율 체계	41
〈표 I-30〉 2008~2012년 캐나다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42
〈표 I-31〉 캐나다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42
〈표 I-32〉 캐나다의 법인세율 변화	43
〈표 I-33〉 2008~2012년 일본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44
〈표 I-34〉 일본의 소득세율 체계	44
〈표 I-35〉 일본의 법인세율 체계	46
〈표 I-36〉 2008~2012년 중국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47
〈표 I-37〉 중국의 근로소득세율 체계 변화	48
〈표 I-38〉 호주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51
〈표 II-1〉 미국의 최고소득자 400명의 개인소득세 분석 자료	53
〈표 II-2〉 미국의 최고소득자 400명의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분포도	54
〈표 II-3〉 소득 5분위별 세전소득의 비중(pre-tax income share)	55

제2부

표 목차

〈표 I-1〉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법개정안	71
〈표 II-1〉 영국의 부가가치세 사업자 지연 등록 가산세율	101
〈표 II-2〉 로빈세 개정내용	103
〈표 II-3〉 현행 소득세 과세구간	104
〈표 II-4〉 포르투갈의 과세구간별 세율 및 세액공제 한도	108
〈표 II-5〉 부유세의 현행 및 개정 세율체계 비교	112
〈표 II-6〉 상속증여세율 체계	113
〈표 II-7〉 장기보유공제 제도 개정내역	116

〈표 II-8〉 2011년 과세연도의 소득세율 구간	118
〈표 III-1〉 부흥특구법에 따른 지진 지원세제(법인세특례조치)	132
〈표 III-2〉 시험연구비의 특별세액공제	133
〈표 III-3〉 특정지출공제의 한도	135
〈표 III-4〉 연도별 비과세금액	136
〈표 III-5〉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단계	139
〈표 III-6〉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140
〈표 III-7〉 세율 및 산출세액(2011-2012)	143
〈표 III-8〉 세율 및 산출세액(2012-2015)	143
〈표 III-9〉 세율 및 산출세액(2015-2016)	144

I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I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세제 개정 동향

[조세동향 11-24] 및 [조세동향 11-25]

1. 프랑스

가. 재정상황

- 재정수지는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총부채 규모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표 1-1〉 2008~2012년 프랑스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¹⁾	2011p ²⁾	2012p ²⁾
재정수지	-3.4	-7.6	-7.1	-5.8	-4.9
총부채	68.3	79.0	82.4	84.8	86.6

주: 1) 추정치(estimate)

2) 예측치(projection)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pp. 4~5.

나. 개인소득세

- 프랑스의 소득세율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소득세 과세구간에 걸친 0%에서 41%까지의 누진세율구조임
- 최고세율인 41%는 70,830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적용함
 - 5,963유로에 미달하는 과세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 재정적자의 감축을 위하여 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은 2011년 10월 19일에 25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가세(surtax)의 추가징수를 승인함
- 부가세는 소득세의 최고구간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의 구간에 대해서 3%나 4%의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임
 - 부가세율은 25만유로부터 50만유로 미만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3%가 부과되고, 50만유로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4%가 부과됨
 - 부가세의 도입 목적은 고소득 납세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담시켜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함임
 - 현재, 부가세(안)는 프랑스 상원(Senate)에 상정되었으며, 상원은 2011년 12월 20일에 도입을 결정할 예정임
 - 부가세는 2011년 과세연도(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됨

〈표 1-2〉 2011년 프랑스의 소득세율 체계

(단위: 유로, %)

과세소득 구간			소득세율	부가세율	총세율
0	~	5,963	0	-	0
5,964	~	11,896	5.5	-	5.5
11,897	~	26,420	14	-	14
26,427	~	70,830	30	-	30
70,831	~	250,000	41	-	41
250,001	~	500,000	41	3	44
500,000	초과		41	4	45

-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장기보유공제를 위한 보유기간이 확대되고, 공제율이 인하됨
- 장기보유공제: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자본이득의 일정비율을 자본이득에서 공제함

- 개정된 공제율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됨

〈표 1-3〉 프랑스 장기보유공제율 개정내역

보유기간	장기보유공제율	
	개정 전	개정 후
0 ~ 5년	없음	없음
6 ~ 15년	$(\text{보유연수} - 5) \times 10\%$	$(\text{보유연수} - 5) \times 2\%$
16 ~ 17년	100%	$20\% + (\text{보유연수} - 15) \times 2\%$
18 ~ 24년	100%	$24\% + (\text{보유연수} - 17) \times 4\%$
25 ~ 30년	100%	$52\% + (\text{보유연수} - 24) \times 8\%$

다. 부가가치세

- 프랑스의 부가가치세는 일반세율과 경감세율의 복수세율체제를 도입하고 있음
 - 경감세율은 두 개의 세율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초적 필수품에 대해서는 5.5%를 적용하고, 도서, 문화 등에 대해서는 2.1%를 적용함
- 일반세율은 2000년 4월 1일 이후 19.6%로 계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경감세율은 1991년 7월 29일 이후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됨
 - 일반세율의 적용대상 : 법에서 정한 경감세율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
 - 5.5% 경감세율 적용대상 : 기초적 필수품으로 물, 의약품, 장애인 보조구, 호텔 등 숙박시설의 공급 등임
 - 2.1% 경감세율 적용대상 : 사회보호법상 의약품, 적절한 도서, 특정한 문화공연의 공급

라. 법인세

- 법인세율은 표준세율과 경감세율로 구성되며, 금융위기 관련한 변동이 없음

□ 표준세율 : 33.33%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이 적용 : 38,120유로까지는 15%, 이후는 표준세율
 - 중소기업 : 매출액 7,630,000유로 이하의 기업
- 대기업의 경우 납부할 법인세액에 3.3%를 추가하여 부담하므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34.43%p임
 - 대기업 : 매출액 7,630,000유로 초과하는 기업

2. 영국

가. 재정상황

- 재정수지는 2011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총부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영국은 금융위기 발생 이후 재정적자 규모 감축을 위해 세제혜택 축소, 세입확대, 공공 지출 삭감,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다양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표 1-4〉 2008~2012년 영국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4.9	-10.3	-10.2	-8.5	-7.0
총부채	52.0	68.3	77.1	82.9	86.5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pp. 4~5.

나. 개인소득세

- 영국은 2009-2010 과세연도까지 최고세율이 40%였으나, 2010-2011 과세연도부터 1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이 신설됨
 - 이는 노동당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영국 국세청은 2010-2011 과세연도에 총납세자의 약 0.9%(27.5만명)가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이들의 납부세액이 총납부세액의 약 25.7%(41.4억파운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함¹⁾
 -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면서 기본세율 구간은 34,800파운드에서 37,400파운드로 상향조정됨
 - 단, 2011-2012 과세연도부터 기본세율 구간이 다시 35,000파운드로 하향 조정됨

〈표 1-5〉 영국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¹⁾

(단위: 파운드)

세율	과세소득 구간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기본세율(20%)	0~34,800	0~37,400	0~37,400	0~35,000
높은세율(40%)	34,801~	37,401~	37,401~150,000	35,001~150,000
추가세율(50%)	N/A	N/A	150,001~	150,001~

자료: 영국 국세청(HMRC)

-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surtax)나 부유세와 같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 세제조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 부가가치세

-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일반세율과 경감세율의 복수세율 체제를 도입하고 있음

1) HMRC, "Income Tax Liabilities Statistics", 28 April 2011

- 경감세율은 국산 연료 또는 전력의 공급, 노인용 이동보조장비 설치 등 법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됨
-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17.5%→15%→17.5%)한 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이를 다시 인상(17.5%→20%)함
 - 2008년 12월 1일 이전 부가가치세율은 17.5%였음
 - 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2008년 12월 1일부터 표준세율을 15%로 인하한 후, 2010년 1월 1일부터 이를 다시 17.5%로 회복시킴
 - 그러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2011년 1월 4일부터 표준세율을 다시 20%로 인상함
 - 경감세율(5%)은 1997년 이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표 1-6〉 영국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단위: %)

구분	~2008. 11. 31	2008. 12. 1~ 2009. 12. 31	2010. 1. 1~ 2011. 1. 3	2011. 1. 4
표준세율	17.5	15	17.5	20
경감세율	5	5	5	5

라. 법인세

- 영국의 법인세율은 소액이윤세율(small profit rate)과 본세율(main rate)로 구성되어 있음
 - 법인의 이익이 30만파운드 이하이면 소액이윤세율로 과세됨
 - 법인의 이익이 30만파운드를 초과하고 150만파운드 이하이면 본세율에 표준공제(standard fraction)를 적용한 세율로 과세됨
 - 본세율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된 세율로서, 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됨
 - 법인의 이익이 150만파운드를 초과하면 본세율로 과세됨

- 영국 법인세율은 투자촉진과 경기부양을 위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임
- 소액이윤세율은 2011년에 21%에서 20%로 인하됨
 - 본세율은 2011년에 2% 인하(28%→26%)되었으며, 2012년에는 1% 인하(26%→25%)됨
 - 2013년에는 본세율이 1% 추가 인하(25%→24%)될 예정임

〈표 I-7〉 영국의 법인세율 변화

(단위: %)

구분	소액이윤세율 (small profit rate)	본세율 (main rate)	표준공제 (standard fraction)
2010	21%	28%	7/400
2011	20%	26%	3/200
2012	20%	25% ¹⁾	1/80

주: 1) 2013년에는 24%로 인하될 예정임

자료: 영국 국세청 (www.hmrc.gov.uk)

3. 독일

가. 재정상황

- 독일은 2011년부터 재정수지와 총부채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유럽국가 중 비교적 재정상황이 안정적인 독일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중임

〈표 I-8〉 2008~2012년 독일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0.1	-3.0	-3.3	-1.9	-1.1
총부채	66.3	73.4	83.2	82.3	81.0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pp. 4~5.

나. 개인소득세

- 독일의 소득세율 체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됨
 - 2008~2010년의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 반영을 위해 매년 과세소득 구간이 소폭 인상되고, 2009 과세연도부터 최저세율이 15%에서 14%로 인하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

〈표 1-9〉 독일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유로, %)

구분	2008년		2009년		2010~2011년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독신자	0~7,664	0	0~7,834	0	0~8,004	0
	7,665~52,151	15~42	7,835~52,551	14~42	8,005~52,881	14~42
	52,152~250,000	42	52,552~250,400	42	52,882~250,730	42
	250,001~	45	250,401~	45	250,731~	45
부부 합산	0~15,329	0	0~15,669	0	0~16,009	0
	15,330~104,303	15~42	15,670~150,103	14~42	16,010~105,763	14~42
	104,304~500,000	42	150,104~500,800	42	105,764~501,460	42
	500,001~	45	500,801~	45	501,461~	45

자료: KPMG, "Germany Taxation of International Executives", 2009 (2008~2010년 세율)
IBFD(2011년 세율)

다. 부가가치세

- 독일의 부가가치세율은 2007년에 한차례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 표준세율은 2006년까지 16%가 적용되었으나 2007년부터 19%로 인상됨
 - 일부 공급거래에 대해서는 7%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며, 경감세율은 최근 변동된 바 없음

라. 법인세

- 독일의 법인세율은 2008년 이래 변동 없이 15%로 유지되고 있음

마. 기타

- 일부 정당, 고소득자 및 납세자 연대에서 1997년에 폐지된 부유세를 재도입하자는 주장을 제기함
 - 독일은 1992년부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하여 개인 1%, 법인 0.6%의 세율을 적용한 부유세를 부과하기 시작함
 - 그러나 부유세 과세대상자산의 평가가 공평하지 못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1997년 1월 1일 부유세를 폐지함
 - 2009년 이후 독일의 일부 정당, 고소득자 및 납세자 연대에서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독일 정부의 재원확충 도모를 위해 소득세 인상 대신 부유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진행된 바 없음

4. 이탈리아

가. 재정상황

- 재정수지는 2009년에 -5.3%로 하락한 이후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2008년 이후 총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짐

〈표 1-10〉 2008~2012년 이탈리아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2.7	-5.3	-4.5	-4.1	-3.2
총부채	106.3	116.1	119.0	120.6	120.3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pp. 4~5.

나. 개인소득세

- 이탈리아의 소득세율은 <표 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소득세 과세구간에 걸친 23%에서 43%까지의 누진세율구조임
 - 최고세율인 43%는 75,000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적용함
- 이탈리아 의회는 재정적자의 감축을 위하여 2011년 9월 14일에 30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가세(surtax)의 추가징수 및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인상 등을 포함한 긴급패키지(law decree 138/2011)를 승인하였음
- 30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현행 과세구간의 세율에 3%p의 세율이 추가됨
 - 국회의원의 경우, 9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현행 과세구간의 세율에 10%p의 세율이 추가되고, 15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현행 과세구간의 세율에 20%p의 세율이 추가됨
 - 다만, 인상된 추가세율은 2011년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임
 - 공공부문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9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현행 과세구간의 세율에 5%p의 세율이 추가되고, 15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현행 과세구간의 세율에 10%p의 세율이 추가됨
 - 이 조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부담을 가중한 후 재정이 균형을 이루는 2013년 이후에는 원래의 세율로 환원될 예정임

〈표 1-11〉 2011년 이탈리아의 소득세율 체계

(단위: 유로, %)

과세소득 구간			소득세율	부가세율	총세율
0	~	15,000	23	-	23
15,001	~	28,000	27	-	27
28,001	~	55,000	38	-	38
55,001	~	75,000	41	-	41
75,001	~	300,000	43	-	43
300,001	이상		43	3	46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12.5%에서 20%로 인상된 단일세율을 적용함
 - 내국법인이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12.5%에서 20%로 인상됨
 - 인상된 세율은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 조세조약이 더 낮은 세율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채권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12.5%에서 20%로 인상됨
 - 다만, 이에 해당되는 채권에는 이탈리아, EU 및 이탈리아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 제외됨
 - 인상된 세율은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다. 부가가치세

-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 경감세율의 복수세율체제로 이루어짐
 - 경감세율은 두 개의 세율이 운영되고 있는데,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하고, 특정 농산물, 신문 등에 대해서는 4%를 적용함
- 일반세율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하여 2011년 9월 17일 이후부터 종전 20%에서 1%가 인상된 21%를 적용하나 경감세율은 종전 세율을 계속 적용함
 - 일반세율의 적용대상 : 법에서 정한 경감세율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
 - 10% 경감세율 적용대상 : 살아 있는 가축,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 4% 경감세율 적용대상 : 우유, 버터 등 특정 농산물, 축산물, 신문 등

〈표 1-12〉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단위: %)

구분	~1997. 9. 30	1997. 10. 1~ 2011. 9. 16 (변경 전)	2011. 9. 17~ (변경 후)
표준세율	19	20	21
경감세율	10	10	10
	4	4	4

라. 법인세

- 법인세의 표준세율은 2008년부터 33%에서 27.5%로 인하되어 유지되고 있음
- 다만, 석유·가스·전기에너지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부담하는 조세(소위, 로빈세)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한시적으로 세율이 인상되어 38%의 세율이 적용됨
 - 로빈세(Robin tax)는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유가급등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금임
 - 로빈세(Robin tax)는 석유 등 에너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매출액요건과 산업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이들 법인의 법인세에 추가하여 징수함
 - 인상된 세율(6.5%에서 10.5%로 인상)은 2011년, 2012년 및 2013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됨
- 로빈세가 적용되는 산업이 확대되고 금액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로빈세의 적용대상이 확대됨
 - 적용산업의 확대 : 기존의 적용대상 법인에 석유, 전기산업을 영위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포함됨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 합성물의 연구·생산업, 석유정제업, 석유와 가스 생산·판매업 및 전력생산·판매업을 영위하여야 함
 - 다만, 석유·가스의 운송, 저장과 전력의 전송 등에 관련된 법인은 제외됨
 - 금액기준의 인하 : 직전 과세연도의 총매출액이 1천만유로를 초과하면서 과세소득이 1백만유로를 초과한 법인이 적용대상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전 과세연도의 총매출액이 2.5천만유로를 초과하여야 함
 - 긴축패키지에 따르면 가산할 세금은 법인세 과세소득의 10.5%임
 - 따라서 최종적으로 부담할 법인세율은 $27.5\% + 10.5\% = 38\%$ 임
 - 현행 제도에 따르면, 6.5%임

〈표 I-13〉 이탈리아 로빈세 개정내용

구분		현행제도	긴축패키지
적용대상	매출액	직전 과세연도의 총매출액이 2.5천만유로를 초과	총매출기준이 1천만유로를 초과하면서 과세소득이 1백만유로를 초과
	산업	석유와 가스 합성물의 연구·생산업, 석유정제업, 석유와 가스 생산·판매업 및 전력생산·판매업을 영위하여야 함 석유·가스의 운송, 저장과 전력의 전송 등에 관련된 법인은 제외됨	현행 제도에 전기전송업, 가스와 전기의 운송업, 재생에너지산업이 추가됨
세율		6.5%	10.5%

5. 스페인

가. 재정상황

- 스페인의 재정상황은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²⁾
- 재정수지는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악화되는 추세임
 - 재정수지 악화와 위기극복을 위해 금융부문에 지원을 확대하면서 부채가 증가함

〈표 I-14〉 2008~2012년 스페인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4.2	-11.1	-9.2	-6.2	-5.1
총부채	39.8	53.3	60.1	67.5	69.7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pp. 4~5.

2)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나. 개인소득세

- 스페인은 2011년 44%와 45%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함
 - 2011년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여 12만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44%의 세율로 과세하고 17.5만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45%의 세율로 과세함

〈표 1-15〉 스페인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유로)

세율	과세소득 구간	
	2010년	2011년
24%	0~17,707.20	0~17,707.20
28%	17,707.21~33,007.20	17,707.21~33,007.20
37%	33,007.21~53,407.20	33,007.21~53,407.20
43%	53,407.21~	53,407.21~120,000.20
44%	해당사항 없음	120,000.21~175,000.20
45%	해당사항 없음	175,000.21~

자료: IBFD, <http://www.ibfd.org>

다. 부가가치세

- 스페인의 부가가치세(VAT)는 일반세율, 경감세율과 초경감세율(super-reduced rate)의 세율체제를 도입하고 있음
 - 경감세율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음식(food), 주거(dwelling), 교통수단(transport), 관광(tourism) 등에 적용됨
 - 초경감세율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식음료, 약물, 건설업과 신문 등 생활 필수품(basic necessities)에 적용됨

- 2010년 7월 1일부터 표준세율을 2% 인상(16%→18%)하고 경감세율을 1% 인상(7%→8%)함
 -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 방안 중 하나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던 16%의 표준세율을 18%로 인상하고, 7%의 경감세율을 8%로 인상함
 - 초경감세율은 4%로 변동 없이 유지됨

〈표 I-16〉 스페인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단위: %)

구분	2010. 6. 30까지 (변경 전)	2010. 7. 1부터 (변경 후)
표준세율	16	18
경감세율	7	8
초경감세율	4	4

자료: IBFD, <http://online.ibfd.org/kbase/>

라. 법인세

- 2008년부터 스페인의 법인세율은 30%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 또는 단체에 경감세율이 적용됨
 - 보험회사, 지방 및 협력은행(rural and cooperative banks), 새마을금고(credit cooperatives), 법정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전문직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s) 및 무역연합(trade unions)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됨
 - 특정 법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의 경우 10%의 세율로 과세됨
 -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institutions)의 경우 1%의 세율로 과세됨
 - 연금기구 및 펀드의 경우 0%의 세율이 적용됨
- 스페인의 법인세율은 2006년까지 35%가 적용되었으며 2007년 32.5%로 2.5%p 인하된 후 2008년부터 30%로 유지되고 있음

- 스페인 정부는 재정감축을 목표로 2011년 8월 19일에 발표한 개정세법에서 법인세법 중간예납 세율을 인상하고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발표함³⁾
 -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세율을 21%에서 24% 및 27%로 인상함
 - 매출 규모에 따라 매출액이 2백만유로 이상인 경우 24%를 적용하고 6백만유로 이상인 경우 27%를 적용함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를 신설하고 한시적으로 적용함
 -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의 일부만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됨
 - 매출액이 2백만유로 이상 6백만유로 미만인 납세자는 과세표준의 75%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매출액이 6백만유로 이상인 납세자는 과세표준의 50%까지 공제할 수 있음

마. 기타

- 2009년부터 부유세를 폐지하였으나 2011년 9월 부유세 부활을 위한 법을 시행한 결과 70만유로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 0.2~2.5%의 세율로 부유세를 과세함⁴⁾
 - 1991년 부유세가 도입된 이후 2008년부터 폐지되었으나, 긴축재정을 위해 세입을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써 2011년 9월부터 재도입된 것임
 - 폐지의 내용은 2008년 4월 18일 경기부양을 위한 패키지에 포함되었고, 부유세 폐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폐지 당시 부유세의 납세의무는 개인납세자로 60만유로를 넘는 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초과자산에 0.2~2.5%의 세율로 부과되었음
 - 2011년과 2012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함

3) 조세동향 11-18/2011. 9를 참조

4) IBFD, <http://www.ibfd.org>

6. 포르투갈

가. 재정상황⁵⁾

- 성공적인 재정통합 프로그램(fiscal consolidation programmes)과 경기성장으로 인해 2005~2007년의 재정수지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금융위기 발발로 2008년 이후 재정수지가 악화됨
 - 2010년의 구조조정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GDP 대비 7.8%로 OECD 평균인 -3.4%보다 낮은 수준임
 - 2010년의 총부채는 GDP 대비 103.1%로 OECD 평균인 74.2%보다 높은 수준임

나. 개인소득세

- 포르투갈은 2010년 45.88%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함
 - 150,000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 최고세율보다 3% 인상된 45.88%의 세율을 적용함
- 재정위기로 2009년 이후 세율이 매년 인상되는 추세임

〈표 1-17〉 포르투갈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유로,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 ~ 4,639	10.5	0 ~ 4,755	10.5	0 ~ 4,793	11.08	0 ~ 4,898	11.5
4,640 ~ 7,017	13	4,756 ~ 7,192	13	4,794 ~ 7,250	13.58	4,899 ~ 7,410	14
7,018 ~ 17,401	23.5	7,193 ~ 17,836	23.5	7,251 ~ 17,979	24.08	7,411 ~ 18,375	24.5
17,402 ~ 40,020	34	17,837 ~ 41,021	34	17,980 ~ 41,349	34.88	18,376 ~ 42,259	35.5
40,021 ~ 58,000	36.5	41,022 ~ 59,450	36.5	41,350 ~ 59,926	37.38	42,260 ~ 61,244	38
58,001 ~ 62,546	40	59,451 ~ 64,110	40	59,927 ~ 64,623	40.88	61,245 ~ 66,045	41.5
62,547 ~ 이상	42	64,111 ~ 이상	42	64,624 ~ 150,000	42.88	66,046 ~ 153,000	43.5
				150,001 ~ 이상	45.88	153,001 ~ 이상	46.5

자료: OECD Statistics

5)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1 - Country Note: Portugal", 2011년 6월 24일

다. 부가가치세

-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VAT)는 표준세율(standard rate),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과 경감세율(reduced rate)로 구성됨
 - 경감세율은 생활필수품(basic necessities)에 적용됨
- 재정결손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현행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2%p 인상(21%→23%), 중간세율은 1%p 인상(12%→13%)되고 경감세율은 1%p 인상(5%→6%)되었음
 - 2005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6.8%에 달하자 그 해 부가가치세율을 2%p 인상하였으며, 2006년과 2007년 재정적자가 GDP의 3.9%와 2.6%로 감소하여 2008년 부가가치세율을 1%p 인하(21%→20%)함⁶⁾
 - 표준세율⁷⁾은 1986년 16%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이후 재정적자 규모에 따라 17%, 19%, 20%, 21%, 23%의 세율로 계속 조정됨

6) 조세동향 포르투갈 추가 건축계획 의회 제출, 2010. 7. 13 참조

7) 참고로 1986년 이후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율 변동은 다음과 같음

기간	세율(%)
1986. 1. 1 ~ 1988. 1. 30	16
1988. 1. 31 ~ 1992. 3. 23	17
1992. 3. 24 ~ 1994. 12. 31	16
1995. 1. 1 ~ 2002. 6. 4	17
2002. 6. 5 ~ 2005. 6. 30	19
2005. 7. 1 ~ 2008. 6. 30	21
2008. 7. 1 ~ 2010. 6. 30	20
2010. 7. 1 ~ 2010. 12. 31	21
2011. 1. 1 ~	23

〈표 I-18〉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단위: %)

구분	~2008. 6. 30	2008. 7. 1~ 2010. 6. 30	2010. 7. 1~ 2010. 12. 31	2011. 1. 1~
표준세율	21	20	21	23
중간세율	12	12	13	13
경감세율	5	5	6	6

자료: IBFD, <http://online.ibfd.org/kbase/>

- 포르투갈 행정부가 2011년 10월 17일 의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에서 일부 경감세율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함
- 즉, 생수, 유제품 음료 및 디저트, 탄산음료 등 현재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적용대상인 일부 재화 및 용역이 중간세율 또는 표준세율 적용대상으로 전환될 것임⁸⁾

라. 법인세

- 포르투갈 정부는 2009년부터 12.5%의 과세구간을 신설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27.5%의 과세구간을 신설하고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 2008년까지 일반세율인 25%의 세율이 적용됨
 - 2009년부터 12,500유로까지 12.5%의 세율이 적용되고 12,500유로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2010년부터 2백만유로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2.5%의 주정부 부가세(state surtax)를 부과하여 27.5%의 세율로 과세되며 이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2011년 10월 17일에 의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에서 12,500유로 이하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던 12.5%의 법인세 경감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함
- 본 방안에 따르면 이후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 25%의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임

8) 조세동향 포르투갈 2012 예산안 의회 제출, 2011. 11. 18 참조

- 2012년 예산안에서 2012년과 2013년에 한해 state surcharge의 과세구간이 변경되고 세율이 인상됨⁹⁾
 - 현행 규정상 포르투갈 법인은 2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별도로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state surcharge가 부과됨
 - 2012 예산안에 따르면 state surcharge의 과세구간 및 세율이 변경되어 1.5백만 ~ 10백만유로의 소득에 대해서는 3%의 세율이 적용되고 10백만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방침임
 - 이는 2012 및 2013 회계연도에 한해 적용될 예정임

7. 그리스

가. 재정상황¹⁰⁾

- 그리스는 재정악화로 2010년 5월과 2011년 7월 IMF와 EU로부터 각각 1,100억유로와 1,090억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강도 높은 긴축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음

〈표 1-19〉 2008~2010년 그리스의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
재정수지	-9.8	-15.4	-10.5
국가부채	110.7	127.1	142.8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KIPF 재정동향 - 제2권 제3호(통권 제7호)』, 2011년 8월, p. 29.

9) 조세동향 11-23/2011. 11을 참조

10) 한국조세연구원, 『KIPF 재정동향 - 제2권 제3호(통권 제7호)』, 2011년 8월

나. 개인소득세

- 2008~2009년 그리스의 소득세는 5개 과세소득 구간에 대해 15~40%의 누진세율 체제로 운영됨
- 세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과세소득 구간이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확장되고 최고세율 구간과 최고세율이 인상됨
 - 2009년까지는 75,001유로 이상 소득에 대해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100,001유로 이상 소득에 대해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함
 - 새로운 과세소득 구간의 적용으로 중위소득자와 상위소득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비교적 소득이 낮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조세형평성이 제고됨

〈표 I -20〉 그리스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유로, %)

2008~2009년			2010년		2011년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2008	2009				
0~10,500 ¹⁾	0	0	0~12,000 ¹⁾	0	0~5,000	0
10,501~12,000	15	15	12,001~16,000	18	5,001~12,000	10
12,001~30,000	27	25	16,001~22,000	24	12,001~16,000	18
30,001~75,000	37	35	22,001~26,000	26	16,001~26,000	25
75,001~	40	40	26,001~32,000	32	26,001~40,000	35
-	-	-	32,001~40,000	36	40,001~60,000	38
-	-	-	40,001~60,000	38	60,001~100,000	40
-	-	-	60,001~100,000	40	100,001	45
-	-	-	100,001~	45	-	-

주: 1) 2008~2009년에는 연간 총소득 중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자는 12,000유로까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소득세율의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연금소득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동일한 면세점(12,000유로)이 적용되어 소득원천에 대한 과세형평이 개선됨

자료: 그리스 투자청(<http://www.investingreece.gov.gr>) (2008~2009년 세율)

KPMG, "Greece Taxation of International Executives", 2010 (2010년 세율); IBFD (2011년 세율)

- 2011년부터는 전년 대비 면세점이 인하되고 과세소득 구간이 8개 구간으로 축소되었으며 소득세율이 변경됨
 - 그리스 의회는 소득세율 및 일부 소득공제 한도를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Law 4024/2011)을 2011년 10월 25일에 승인함
 - 2010년 기준 12,000유로였던 면세점이 5,000유로로 인하되고, 대부분의 과세소득 구간에서 소득세율이 인상됨
 - 세수확충을 위한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번 소득세율의 개정은 2011년 발 생소득에 대해 소급 적용됨

다. 부가가치세

- 그리스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 경감세율 및 특별경감세율로 이루어짐
 - 경감세율은 유제품, 육류, 커피, 대중교통, 공연 등 법에 열거된 재화 및 용역에 적용됨
 - 특별경감세율은 특정 도서, 신문 및 잡지, 숙박서비스 등에 적용됨
- 그리스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수차례 개정함
 - 2010년 3월과 7월에 각각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단행된 후, 2011년 1월 1일에 한차례 더 세율 인상이 단행됨
 - 금융위기 전후를 비교했을 때, 세율 인상폭은 표준세율 4%(19%→23%), 경감세율은 4%(9%→13%), 특별경감세율 2%(4.5%→6.5%)로 인상폭이 매우 큼

〈표 1-21〉 그리스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단위: %)

구분	~2010. 3. 14	2010. 3. 15~ 2010. 6. 30	2010. 7. 1~ 2010. 12. 31	2011. 1. 1~
표준세율	19	21	23	23
경감세율	9	10	11	13
특별경감세율	4.5	5	5.5	6.5

- 경감세율에 적용되던 일부 재화 및 용역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율적용 대상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짐
 - 2011년 9월 1일부터 일부 음식료에 대해 13%의 경감세율 대신 23%의 표준세율이 부과됨
 - 주스, 탄산수, 탄산음료 및 기타 생수를 제외한 무알콜 음료
 - 레스토랑 서비스 및 케이터링 서비스

라. 법인세

-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의 법인세율은 투자촉진을 위해 대폭 인하됨
 - 2010년에는 1%가 인하(25%→24%)되었으며, 2011년 8월 1일부로 4%가 인하(24%→20%)됨

〈표 I -22〉 그리스의 법인세율 변화

(단위: %)

구분	2008. 1. 1~ 2009. 12. 31	2010. 1. 1~ 2011. 7. 31	2011. 8. 1~
법인세율	25%	24%	20%

자료: Deloitte, Corporate Tax Rate 2008, 2009, 2010, 2011

마. 기타

- 그리스는 긴축정책의 일환으로서 연대세(solidarity tax) 및 재산세(property tax)를 부과할 예정임¹¹⁾
 -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1~5%의 연대세가 부과될 예정임
 -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1m²당 평균 4유로의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임

11) 자세한 내용은 “주요국의 조세동향 11-21호(2011. 10)”를 참고

8. 네덜란드

가. 재정상황

- 재정수지는 2009년에 -5.4%로 하락한 이후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 2008년 이후 총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나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서 총부채의 규모가 크지 않음

〈표 1-23〉 2008~2012년 네덜란드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0.6	-5.4	-5.2	-3.8	-2.7
총부채	58.2	60.8	63.7	65.6	66.5

자료: Fiscal Monitor 2011 April

나. 개인소득세

- 네덜란드의 소득세율은 〈표 1-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소득세 과세구간에 걸친 33%에서 52%까지의 누진세율구조임
- 최고세율인 52%는 55,694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적용함

〈표 1-24〉 2011년 네덜란드의 소득세율 체계

(단위: 유로, %)

과세소득 구간			세율
0	~	18,628	33.00
18,629	~	33,436	41.95
33,437	~	55,694	42.00
55,694	이상		52.00

-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서 정부의 총부채 규모가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재정적자의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수 확대정책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 부가가치세

- 네덜란드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 경감세율 및 특별세율로 이루어짐
 - 경감세율은 6%로 농산물, 의약품 등 기초적인 생필품에 대해서 적용되고, 특별세율은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농산품에 대해서 5.1%를 적용함
- 일반세율은 2001년 1월 1일 이후 19%로 변동 없이 계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경감세율, 특별세율도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됨
 - 일반세율의 적용대상 : 법에서 정한 경감세율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
 - 6% 경감세율 적용대상 : 농산품, 의약품, 물, 도서, 가스, 유류, 목재 등 재화와 도서의 대여, 특정 품목의 수선, 숙박시설의 제공 등과 같은 용역의 공급
 - 5.1% 특별세율 적용대상 : 농업, 어업, 목재업, 원예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그 생산품

라. 법인세

- 법인세율은 200,000유로까지는 20%이며, 200,00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됨
 - 200,00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2010년 이전에는 25.5%의 법인세율이 적용됨

9. 스위스

가. 재정상황¹²⁾

- 스위스는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재정흑자를 유지해 오는 등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
 - 2010년의 구조조정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GDP 대비 1.1%로 OECD 평균인 -3.4%보다 높은 수준임
 - 2010년의 총부채는 GDP 대비 40.2%로 OECD 평균인 74.2%보다 낮은 수준임

나. 개인소득세

- 스위스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연방정부 이외에도 칸톤(canton,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 및 지방자치단체(communal)에서 소득세를 부과함
 - 칸톤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소득세율은 지역별로 상이함
 - 연방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0~11.5%의 세율을 적용하며, 칸톤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소득세의 세율까지 합산하면 지역에 따라 22~42%의 세율이 적용됨
- 스위스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율은 금융위기 이후 크게 변동되지 않음
 - 스위스는 납세자가 독신자인 경우와 부부합산인 경우에 대해 각각 별도의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됨
 - 2008년 이후 과세소득 구간은 소폭 인상되었으나, 세율의 중대한 인상 또는 인하는 없었음

12)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1 - Country Note: Switzerland”, 2011년 6월 24일

〈표 I-25〉 2011년 스위스의 소득세율

(단위: 스위스프랑, %)

독신자인 경우				부부합산인 경우			
과세소득구간			소득세율	과세소득구간			소득세율
0	~	14,400	0	0	~	28,100	0
14,401	~	31,500	0.77	28,101	~	50,400	1
31,501	~	41,200	0.88	50,401	~	57,900	2
41,201	~	55,000	2.64	57,901	~	74,700	3
55,001	~	72,200	2.97	74,701	~	89,700	4
72,201	~	77,700	5.94	89,701	~	102,700	5
77,701	~	103,000	6.6	102,701	~	113,900	6
103,001	~	133,900	8.8	113,901	~	123,300	7
133,901	~	175,000	11	123,301	~	130,800	8
175,001	~	751,200	13.2	130,801	~	136,300	9
751,201	~	751,300	11.5	136,301	~	140,200	10
751,401	이상		11.5 ¹⁾	140,201	~	142,100	11
				142,101	~	144,000	12
				144,001	~	889,400	13
				889,501	이상		11.5 ²⁾

주: 1) 과세소득이 751,401스위스프랑 이상인 경우, 전체 소득금액에 대해 11.5%의 세율이 적용됨

2) 과세소득이 889,501스위스프랑 이상인 경우, 전체 소득금액에 대해 11.5%의 세율이 적용됨

자료: IBFD(www.ibfd.org)

다. 부가가치세

□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 특별세율 및 경감세율로 이루어짐

- 특별세율은 숙박 서비스에 적용되며, 경감세율은 음식료, 농산물, 의료품, 신문, 잡지, 도서, 일부 문화서비스 등에 적용됨

□ 스위스는 공공지출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함

- 표준세율(7.6%→8%), 특별세율(3.6%→3.8%), 경감세율(2.4%→2.5%) 모두 인상됨

-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8%는 유럽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표 1-26〉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단위: %)

구분	~2010. 12. 31 (변경 전)	2011. 1. 1~2017. 12. 31 (변경 후)
표준세율	7.6	8
특별세율	3.6	3.8
경감세율	2.4	2.5

라. 법인세

- 스위스의 법인세율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변동 없이 8.5%로 유지되고 있음
 - 법인세율은 8.5%이나, 칸톤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소득세의 세율까지 합산하면 지역에 따라 13~22%의 세율이 적용됨

10. 미국

가. 재정상황

-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확대됨¹³⁾
 - 금융위기 이전 2000년대 초반 주식시장 붕괴 및 911테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수지가 악화됨

13)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p. 30.

〈표 1-27〉 2008~2012년 미국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6.5	-12.7	-10.3	-9.9	-7.8
총부채	71.2	84.5	91.2	98.3	102.3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pp. 4~5.

나. 개인소득세

-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세율의 변동은 없었으며, 물가인상에 따라 매년 과세소득 구간을 상향 조정함
 - 미국은 매년 물가인상 조정에 따라 과세구간을 변경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과세소득 구간이 상향 조정됨
 - 현행 소득세율은 2001년과 2003년 감세법의 적용으로 낮아졌으며, 감세법이 2012년까지 연장 적용될 예정임
 - 2001년 조지부시 대통령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10%의 저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상위 4개의 세율을 낮춤
 - 기존 15%, 28%, 31%, 36%와 39.6%의 5개 세율 구간이 10%, 15%, 25%, 28%, 33%와 35%의 6개 세율 구간으로 개정됨
 - 2003년에 2001년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고 자본이득과 배당에 15% 낮은 세율을 일시적으로 부과함
 - 2001년과 2003년 실시한 감세정책을 2012년까지 연장하였음
 -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예산안 및 미국의 경제성장 및 재정적자 감축방안에서 고소득층에 적용하던 감세정책을 폐지하고 33%와 35%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함
 - 2001년도 및 2003년도 감세법이 폐지되면 33%와 35%의 세율이 36%와 39.6%로 환원될 것임

〈표 1-28〉 미국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미국달러)

세율 ¹⁾	과세소득 구간 ¹⁾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0%	0~8,025	0~8,350	0~8,375	0~8,500
15%	8,026~32,550	8,351~33,950	8,376~34,000	8,501~34,500
25%	32,551~78,850	33,951~82,250	34,001~82,400	34,501~83,600
28%	78,851~164,550	82,251~171,550	82,401~171,850	83,601~174,400
33%	164,551~357,700	171,551~372,950	171,851~373,650	174,401~379,150
35%	357,701~	372,951~	373,651~	379,151~

주: 1) 세율은 장기자본이득을 제외한 개인소득세의 세율이며, 과세소득 구간은 단일신고를 기준으로 함.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단일신고(single),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ied widow or widower), 부부개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와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과세소득 구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자료: 미국 국세청(IRS) 및 위키피디아(wikipedia)

-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증대 및 재정적자 감축방안(The President's Plan for Economic Growth and Deficit Reduction)’의 5가지 과세원칙 중 하나로 버핏룰(Buffett Rule)의 준수를 제시함

- 관련 내용은 조세동향 2011-23(2011. 11. 18) 참조

-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버핏룰이라는 대원칙만 제시하고 어떠한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다. 법인세

- 미국의 법인세율은 2008년부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표 I-29〉 미국의 법인세율 체계

(단위: 미국달러)

세율 ¹⁾	과세소득 구간
15%	0~50,000
25%	50,001~75,000
34%	75,001~100,000
39%	100,001~335,000
34%	335,001~10,000,000
35%	10,000,001~15,000,000
38%	15,000,001~18,333,333
35%	18,333,334~

자료: 미국 국세청(IRS) 및 위키피디아(wikipedia)

11. 캐나다

가. 재정상황

- 캐나다는 현재 주요 7개국(G-7) 중에서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향후 2년간 G-7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됨
 - 캐나다는 1990년대 중반에 실시된 연방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 및 연금의 구조적 개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흑자재정 및 G7 중 가장 낮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기록함¹⁴⁾
 - 연방정부는 2015~2016년 재정수지를 42억달러로 집계하며 재정흑자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4)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p. 46.

〈표 1-30〉 2008~2012년 캐나다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0.1	-4.9	-5.6	-3.9	-2.6
총부채	71.1	83.3	83.9	82.7	81.6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pp. 4~5.

나. 개인소득세

- 캐나다는 금융위기 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세율의 변동은 없었으며, 물가인상에 따라 매년 과세소득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있음
 - 캐나다는 2000년 17%, 25%, 29%의 3개 세율구간을 두고 있었으나 2001년 16%, 22%, 26%, 29%의 4개 세율구간으로 개정함
 - 2005년부터 16%의 낮은 세율을 15%로 낮춘 이후 2011년까지 15%, 22%, 26%, 29%의 세율을 유지함

〈표 1-31〉 캐나다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캐나다달러)

세율	과세표준 구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5%	0~37,885	0~40,726	0~40,970	0~41,544
22%	37,886~75,769	40,727~81,452	40,971~81,941	41,545~83,088
26%	75,770~123,184	81,453~126,264	81,942~127,021	83,089~128,800
29%	123,185~	126,265~	127,022~	128,801~

자료: 캐나다 국세청(CRA), <http://www.cra-arc.gc.ca/tx/ndvdl/fq/txrt-py-eng.html>

다. 부가가치세

- 캐나다의 부가가치세는 GST(Goods and Service Tax)와 주정부의 PST(Provincial Sales Tax)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7월 1일 이후 일부 주에서 GST와 PST를 통합한 HST(Harmonized Sales Tax)를 도입함
 - 2010년 7월 1일부터 연방세와 주세의 통합세 체계인 HST 체계의 도입에 찬성한 참여지역과 GST와 PST의 별도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참여지역으로 구분됨
 - HST의 세율은 주별로 5%, 12%, 13%, 15%임
- 캐나다는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가가치세 연방세율의 변동 없이 5%의 세율이 유지됨
 - 2006년 7월 1일 7%의 부가가치세율을 6%로 인하한 후 2008년 1월 1일부터 6%의 세율을 5%로 인하한 것임

라. 법인세

- 2007년까지 캐나다의 법인세율은 21%였으나 2008년부터 세율이 계속 인하되어 2012년부터 15%의 세율이 적용됨
 - 2007년 21%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부가세(surtax)가 폐지되면서 2008년부터 19.5%의 세율이 적용됨
 - 2009년 법인세율을 0.5%p 인하(19.5% → 19%), 2010년 법인세율을 1%p 인하(19% → 18%), 2011년 법인세율을 1.5%p 인하(18% → 16.5%)하고 2012년부터 전기 대비 1.5%p 인하된 15% 세율이 적용됨

〈표 I -32〉 캐나다의 법인세율 변화

(단위: %)

구분	~2007. 12. 31	2008. 1. 1~ 2008. 12. 31	2009. 1. 1~ 2009. 12. 31	2010. 1. 1~ 2010. 12. 31	2011. 1. 1~ 2011. 12. 31	2012. 1. 1
세율	21	19.5	19	18	16.5	15

자료: OECD Tax Database, <http://www.oecd.org>

12. 일본

가. 재정상황

-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부채규모도 증가됨
 - 일본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하여 2011년 2012년 재정수지 전망이 악화됨
 - 경제위기를 겪은 2009년 이후 부채규모 전망에 의하면 2012년까지 증가폭이 15%p를 상회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짐

〈표 1-33〉 2008~2012년 일본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4.2	-10.3	-9.6	-10.5	-9.1
총부채	195.0	216.3	220.4	233.2	236.7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pp. 4~5.

나. 개인소득세

-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율 체계를 변경하지 않았음
 - 가장 최근의 소득세율 개정으로는 2007년 개정이 있었고, 당시 세율구간을 4단계에서 6단계로 변경시킴

〈표 1-34〉 일본의 소득세율 체계

과세소득 구간	세율
195만엔 이하	5%
195만엔 초과 ~ 330만엔 이하	10%
330만엔 초과 ~ 695만엔 이하	20%
695만엔 초과 ~ 900만엔 이하	23%
900만엔 초과 ~ 1,800만엔 이하	33%
1,800만엔 초과	40%

자료: 일본 국세청

다. 부가가치세

- 일본의 소비세율은 단일세율로,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 변동은 없었음
 - 소비세율은 4%이나, 소비세액의 25%가 지방소비세로 부과되므로 지방소비세율을 감안하면 그 부담률은 5%가 됨
 - 1997년 3월 31일까지의 세율은 3%였으나, 이후 4%로 인상되면서 현재까지 세율의 변동은 없음
 - 4%로 인상될 때 지방소비세가 창설되어 1997년 4월 1일부터 세부담률이 5%가 됨
- 일본은 최근에 지속적인 소비세율 인상의 논의가 있었음
 - OECD는 2011년 4월 21일에 “대일심사보고서(対日審査報告書)”를 발표하면서 소비세율을 20% 정도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상황은 공적채무 잔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채무 잔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로 소비세 인상을 요구함
 - IMF는 2011년 6월 16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소비세율은 현재의 5%에서 15%로 단계적인 인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함
 - 보고서에 의하면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하여 소비세의 인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서술함
 - 2011년 12월 5일 노다 총리는 ‘사회보장 개혁 본부’ 회의에서 소비세의 단계적 인상을 언급함
 - 2013년 10월에서 2014년 4월까지 소비세를 8% 수준으로 인상한 뒤, 2015년 4월까지 10%로 올리는 ‘2단계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정부 여당의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고 야당도 반대하는 입장임

라. 법인세

-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저소득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음

〈표 1-35〉 일본의 법인세율 체계

구분			2008.12.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	2009.4.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
보통법인			30%	30%
중소법인 ¹⁾	800만엔 초과		30%	30%
	800만엔 이하		22%	18%
협동조합 등	800만엔 초과		22%	22%
	800만엔 이하			18%
공익법인 등	공익사단법인 등 ²⁾	800만엔 초과	30%	30%
		800만엔 이하	22%	18%
	상기 외	800만엔 초과	22%	22%
		800만엔 이하		18%

주: 1) 중소기업은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임

2) 공익사단법인 등은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일반사단(재단)법인 중 비영리형법인임

자료: 일본 국세청

- 2008년과 2009년의 법인세율 인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것임
- 일본은 2011년 11월에 수정세법개혁법을 통과시켜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하를 하였음
 - 일본은 통상 1월에 세법개정이 있으나, 2011년 1월에 세법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세법개정안 중 일부를 2011년 11월 30일에 수정세법개혁법으로 통과시켰음
 - 2012년 4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이 30%에서 25.5%로 인하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은 한시적으로 18%에서 15%로 인하됨
 - 중소기업은 연간소득이 800만엔 이하인 기업이며, 15%의 세율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
- 2011년 12월 2일에 동북지진재건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함

- 2012년 4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5년 3월 3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이 25.5%에서 28.05%로 인상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15%에서 16.5%로 인상됨

마. 기타

- 일본의 부유세는 1950년에 도입되었다가 1953년에 폐지된 상태임
 - 1949년 샤프에 의해서 소득세율 인하 및 부유세 도입이 권고됨
 - 부유세는 총자산으로부터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대하여 과세함
 - 당시 최고세율이 85%였는데, 이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부유세가 권고됨
 - 이에 따라 1950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55%로 하는 동시에 0.5%에서 3%의 누진세율로 부유세가 도입됨
 - 부유세는 1953년에 폐지되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65%로 인상됨
 - 부유세의 세수충액이 높지 않고 자산의 포괄적인 파악 등 세무집행의 문제가 발생함

13. 중국

가. 재정상황

- 중국은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확장 경제정책을 하고 있는 결과이며, 중국의 재정상태는 중국의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불과할 정도로 건전한 편임¹⁵⁾

〈표 I-36〉 2008~2012년 중국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0.4	-3.1	-2.6	-1.6	-0.7
총부채	17.0	17.7	17.0	16.5	15.7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pp. 4~5.

15) 한·중 경제포럼, 2010년 12월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 개인소득세

- 중국의 현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체계는 9단계이며 2011년 9월부터 7단계로 축소됨
 - 중국은 근로소득, 개인사업소득 등 소득별로 적용되는 소득세율 체계가 다름

〈표 1-37〉 중국의 근로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위안)

~2011. 8			2011. 9		
단계	월 과세소득	세율	단계	월 과세소득	세율
1	500 이하	5%	1	1,500 이하	3%
2	500 초과 2,000까지	10%	2	1,500 초과 4,500까지	10%
3	2,000 초과 5,000까지	15%	3	4,500 초과 9,000까지	20%
4	5,000 초과 20,000까지	20%	4	9,000 초과 35,000까지	25%
5	20,000 초과 40,000까지	25%	5	35,000 초과 55,000까지	30%
6	40,000 초과 60,000까지	30%	6	55,000 초과 80,000까지	35%
7	60,000 초과 80,000까지	35%	7	80,000 초과	45%
8	80,000 초과 100,000까지	40%			
9	100,000 초과	45%			

자료: 조세동향 11-15, 2011. 7

- 2011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소득세 납세자 및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고소득자는 더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 부가가치세

- 중국의 증치세는 2009년 1월부터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전환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의 증치세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항목이기는 하지만, 용역부문은 증치세가 아닌 영업세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과세노무’는 증치세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과세노무’는 가공수라수선 용역 등 공업적 용역을 말함
 - 영업세는 증치세가 부과되는 용역 외의 용역과 재화 중 유형자산을 제외한 무형자산과 부동산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09년 1월 이전에 증치세는 생산형 부가가치세였음
- 중국의 증치세율은 기본세율, 저세율로 이루어졌고 2009년 1월 이후 기간에 변동은 없었음
- 기본세율은 17%이며, 저세율은 13%임
 - 다만,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소규모납세자에 대하여는 3%의 징수율을 적용함
 - 저세율은 양식, 식용식물유, 수돗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 도서,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필름 및 국무원에서 규정하는 기타 제품에 대하여 적용됨
- 중국의 영업세는 원칙적으로 3%와 5%의 두 가지 세율을 적용함
- 교통·운송업, 건축업, 우편·전기·통신업, 문화·체육업은 3%의 세율을 적용하고,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의 양도는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오락업은 5~20%의 세율을 적용함
- 상하이에는 한정하여 증치세와 영업세를 통합하고 현재의 증치세율 외에도 11%와 6%의 증치세율을 도입하여 감세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
- 2011년 1월 원자바오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임
 - 상하이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영업세와 증치세를 통합하고, 소형 및 초소형기업의 증치세 및 영업세 징수기준을 상향조정함
 - 그 결과, 증치세와 영업세가 적용되는 기업이 축소되었으므로 감세조치라고 할 수 있음

라. 법인세

- 중국은 2008년에 법인세율이 인하되었고, 저소득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소득공제 및 저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중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은 25%로,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20%로 변경했음
 - 이 세율은 이자, 로열티, 임차, 리스소득, 자본이득에 모두 적용함
 - 중소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연소득 300,000위안 이하, 종업원 100명 이하, 총자산 1천만위안 이하인 경우이고, 비제조업은 연소득 300,000위안 이하, 종업원 80명 이하, 총자산 1천만위안 이하인 경우임
- 법인세율에 변동은 없지만, 금융위기 동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0년과 2011년에 저소득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소득공제 및 저세율의 적용을 허용함
 - 연소득이 300,000위안 이하인 기업은 연소득의 50%를 소득공제하고, 저세율인 20%를 적용하여 과세함
 - 단, 저소득기업에 대한 한시적 혜택은 비거주자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2011년 11월 29일에 재경부와 국세청이 함께 지침 117을 발표하여, 저소득기업에 대한 세무상 혜택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 대상이 되는 저소득기업은 연소득 60,000위안 이하인 기업임

14. 호주

가. 재정상황

- 호주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재정흑자를 유지해 오다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08-2009 회계연도부터 재정흑자 달성에 실패하였지만, OECD 국가들 중 재정이 양호한 편임¹⁶⁾
- 호주의 소득세율 체계에 대한 개정은 매년 있음
 - 2008년부터 2010년의 소득세율 체계는 5단계의 세율체계를 유지하되, 과세구간 및 세율에 있어서 조금씩 개정이 있었음
 - 2009년 개정 및 2010년 개정이 모두 감세조치였음
 - 2009년의 개정은 각 단계별 과세구간을 확대시키는 감세조치였음
 - 2010년의 개정도 일부 과세구간을 확대시키고 중상위층의 소득세율을 낮추는(40%에서 38%로 인하) 감세조치였음
 - 2011년의 개정도 일부 과세구간을 확대시키고 중상위층의 소득세율을 낮추는(38%에서 37%로 인하) 감세조치였음

〈표 I -38〉 호주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호주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6,000	0%	0~6,000	0%	0~6,000	0%	0~6,000	0%
6,001~30,000	15%	6,001~34,000	15%	6,001~35,000	15%	6,001~37,000	15%
30,001~75,000	30%	34,001~80,000	30%	35,001~80,000	30%	37,001~80,000	30%
75,001~150,000	40%	80,001~180,000	40%	80,001~180,000	38%	80,001~180,000	37%
150,001~	45%	180,001~	45%	180,001~	45%	180,001~	45%

자료: OECD Statistics

16)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p. 130,

다. 부가가치세

- 호주의 소비세율은 단일세율로,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 변동은 없었음
 - 소비세율은 10%이며, 2000년 7월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세율의 변동은 없음

라. 법인세

- 호주의 법인세율은 30%로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 변동은 없었음

마. 기타

- 2011년 7월 1일부터 홍수와 사이클론에 대한 재건부담금이 부과됨
 - 과세소득에 추가하여 과세되며, 일정 과세소득 이상의 납세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 5만~10만호주달러의 과세소득을 가진 납세자에게는 0.5%를 추가 과세함
 - 10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을 가진 납세자에게는 1%를 추가 과세함
 - 홍수와 사이클론에 대한 재건부담금은 2011년 과세연도(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됨

II

미국의 버핏률과 그와 관련된 논의

[조세동향 11-23]

- 미국 국세청에서 고소득자 상위 400명의 개인소득세를 분석한 자료 일부를 소개함¹⁷⁾
- 전체납세자의 조정후총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s, 이하 AGI) 중 400명의 AGI 비중은 1992년 0.52%였으며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면서 2006년 1.31%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400명의 AGI 중 자본이득 비중은 1992년 36.08%, 1999년 72.97%까지 증가하였으며 2004년 56.86%로 감소한 후 2006년 62.75%까지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400명의 AGI 중 낮은 세율 적용대상 자본이득¹⁸⁾의 비중은 1992년 32.97%, 1999년 70.25%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2006년 64.19%로 조사되어 1992년과 비교해 그 비율이 약 2배 정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표 II-1〉 미국의 최고소득자 400명의 개인소득세 분석 자료

(단위: %)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납세자의 AGI 중 400명의 AGI의 비중	0.52	0.50	0.47	0.49	0.66	0.75	0.82	0.91	1.09	0.85	0.69	0.85	1.02	1.15	1.31
400명의 AGI 중 자본이득의 비중	36.08	48.01	52.26	44.10	63.40	66.76	72.91	72.97	71.83	66.20	61.57	60.59	56.86	58.37	62.75
400인의 AGI 중 낮은 세율 적용대상 자본이득의 비중	32.97	42.61	50.65	40.51	58.85	62.98	70.25	67.55	64.01	56.89	55.30	61.08	62.92	59.99	64.19
400인의 평균 실효세율	26.38	29.35	28.57	29.93	27.81	24.16	22.02	22.23	22.29	22.85	22.88	19.53	18.16	18.23	17.17

자료: 미국 국세청(IRS), 통계자료실, The 400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Reporting the Highest Adjusted Gross Incomes Each Year, 1992-2006, <http://www.irs.gov/pub/irs-soi/06intop400.pdf>

- 17) 매년 소득세 신고서 중 조정된 총소득이 가장 높은 400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것으로 매년 동일인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18) 자본이득(capital gain) 중에서 자산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기자본이득(또는 손실)은 일 반소득과 합산하여 10%, 15%, 25%, 28%, 33%, 35%의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하는 장기자본이득(또는 손실)은 1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됨

- 400명의 평균 실효세율은 1992년 26.38%였으며 2003년 20% 미만으로 감소한 후 2006년 17.17%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
- 400명의 평균 실효세율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도수가 많은 실효세율 구간은 1992~1996년 25~30%, 1997~2000년, 2002년 20~25%, 2001년, 2003~2006년 15~20%로 조사되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알 수 있음

〈표 II-2〉 미국의 최고소득자 400명의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분포도

(단위: 명)

실효세율	과세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 이상 10% 미만	6	9	9	7	3	7	7	7	11	19	10	24	27	23	31
10% 이상 15% 미만	10	5	4	5	7	10	31	31	29	30	34	75	112	121	113
15% 이상 20% 미만	17	15	16	13	24	70	109	104	96	108	86	116	103	111	125
20% 이상 25% 미만	62	50	55	32	61	141	146	133	141	94	110	53	34	39	34
25% 이상 30% 미만	234	147	156	148	180	67	28	27	36	22	38	52	51	47	50
30% 이상 35% 미만	71	77	64	85	57	42	27	34	35	44	60	80	73	59	47
35% 이상	-	97	96	110	68	63	52	64	52	83	62	-	-	-	-

주: 1. 실효세율은 납세자가 실제 부담한 세액을 조정후총소득금액(AGI)으로 나눠서 계산된 수치를 의미함

2. 위 표는 실효세율을 7개의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 해당된 인원 수를 표시함

자료: 미국 국세청(IRS), 통계자료실, The 400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Reporting the Highest Adjusted Gross Incomes Each Year, 1992-2006, <http://www.irs.gov/pub/irs-soi/06intop400.pdf>

- 미국 의회예산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위 20% 계급의 세전소득¹⁹⁾이 전체 세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9년 45.5%에서 2007년 55.9%로 증가하였음
- 특히 상위 1% 계급의 세전소득 비중이 1979년 9.3%에서 2007년 19.4%로 10%p 이상 증가함

19) 여기서 세전소득이란 세전 현금수입(pretax cash income)과 그 외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을 합한 금액임. 세전 현금수입은 임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실현된 자본이득, 현금이체, 퇴직금, 고용주가 부담하는 의료보험 등의 세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타 소득은 식료품 금액 지원, 주택마련보조금과 에너지보조금 등과 같이 현물로 받는 혜택을 의미함

〈표 II-3〉 소득 5분위별 세전소득의 비중(pre-tax income share)

(단위: %)

과세 연도	하위 20%	하위 20~40%	40~60%	상위 20~40%	상위 20%	합계	상위 10%	상위 5%	상위 1%
1979	5.8	11.1	15.8	22.0	45.5	100.0	30.5	20.7	9.3
1980	5.7	11.0	15.7	22.1	45.8	100.0	30.6	20.7	9.1
1985	4.8	10.1	15.2	21.9	48.6	100.0	33.4	23.4	11.5
1990	4.6	10.0	15.1	21.6	49.5	100.0	34.4	24.3	12.1
1995	4.6	9.7	14.9	21.3	50.2	100.0	35.2	25.1	12.5
2000	4.0	8.6	13.5	19.6	54.8	100.0	40.6	30.7	17.8
2005	4.0	8.5	13.4	19.7	55.1	100.0	40.9	31.1	18.1
2006	3.9	8.3	13.2	19.5	55.7	100.0	41.7	31.9	18.8
2007	4.0	8.4	13.1	19.3	55.9	100.0	42.0	32.3	19.4

주: 위 표는 세전소득에 따라 전체납세자를 5분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세전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미국 의회예산처(CBO), Average Federal Tax Rates and Income, by Income Category (1979-2007), <http://www.cbo.gov/publications/collections/collections.cfm?collect=13>

- 오바마 대통령이 고용증대 및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5대 원칙 중 하나로 버핏룰(Buffett Rule)을 제시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기존 부자증세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 논란이 가열됨²⁰⁾
- 재정수입 확충을 목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통해 감세법 폐지(최고세율 인상)와 고소득층의 항목별 공제한도 설정 등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혜택 감소와 세율인상을 제안해 왔음
 - 2012년 예산안에서 세입증대를 위해 항목별 공제한도를 최대 28%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함

20) 야당인 공화당(Republican)은 고소득층의 증세를 통한 조세수입 확충 방안과 버핏룰에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음

- 공화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인상, 항목별 공제에 대한 한도 설정, 1,000,000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부가세(surtax)를 부과하는 등의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음
-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버핏룰에 대해서도 계급투쟁(class warfare)으로 묘사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음

-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9월 발표한 일자리법 개정안과 경제성장 및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서 고소득가구의 감세법 및 유산세의 폐지와 항목별 공제한도의 설정 등을 제안함
- 버핏룰이라 불리는 이유는 지난 8월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이 ‘슈퍼부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을 중단하라(Stop Coddling the Super-Rich)’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에 기인함
- (워렌 버핏의 칼럼) 2011년 8월 15일에 워렌 버핏(Warren Buffett)²¹⁾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에서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이는 초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이 이들 회사에서 종사하는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세율보다 낮은 것을 지적하며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세율을 높이자고 주장함
 - 배당과 자본이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이 1,000,000달러 이상²²⁾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인상하고, 과세소득이 10,000,000달러 이상²³⁾인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 (버핏룰)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9월 19일 국회에 제출한 ‘고용증대 및 재정적자 감축방안(The President's Plan for Economic Growth and Deficit Reduction)²⁴⁾’의 5가지 과세원칙²⁵⁾ 중 다섯 번째 원칙으로 버핏룰(Buffett Rule)의 준수를 제시함
 - 여기서 ‘버핏룰’이란 연소득이 1,000,000달러 이상인 자가 중산층 가구(middle-class families)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오바마 행정부는 버핏룰이라는 대원칙만 제시하고 버핏룰이 어떠한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인가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음
 - 버핏룰과 관련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경제회의(National Economic Council) 의장인 Gene Sperling은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버핏룰의 의미에 대해 명확

21) Warren E. Buffett, “Stop Coddling the Super-Rich,” The New York Times, 2011.8.15

22) 워렌 버핏의 칼럼에 따르면 2009년 연소득이 1,000,000달러 이상인 가구는 236,883임

23) 워렌 버핏의 칼럼에 따르면 2009년 연소득이 10,000,000달러 이상인 가구는 8,274임

24) 조세동향 2011-20(2011. 10. 7) 참조

25) 재정적자 감소, 세율 인하,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조세혜택의 폐지, 고용증대와 버핏룰(Buffett Rule) 준수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함

하게 하고 있음

- Gen Sperling은 모든 고소득층이 중산층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버핏률은 공평성 차원에서 연간 1백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고소득 가구가 중산층보다 세금을 적게 내지 않도록 그들이 받고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고 설명함²⁶⁾
 - 단, ‘고용증대 및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지난 2월 발표한 예산안의 자본이득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안을 포함시킴
 - 장기 자본이득과 배당에 대한 세율을 소득이 10%, 15% 누진세율 구간에 있는 납세자는 현행 0%의 세율을 10%까지 인상하고, 소득이 25%, 28%, 33%, 35%의 누진세율 구간에 있는 납세자는 현행 15%의 세율을 20%까지 인상함
 - 전문투자자 등의 파트너십 이자수익을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2001년도 및 2003년도 감세법을 일부 폐지하여 누진세율을 현행 33%와 35%에서 36%와 39.6%로 인상함
 - 유산세 세율을 35%에서 45%로 인상함
 - 미국 일자리법 개정안에서 고소득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항목별 공제금액을 28%로 제한함
- (고소득자에게 부가세 부과) 2011년 10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레이드(Harry Reid)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법 개정안에 연소득 1,000,000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5.6%의 부가세(sur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부부합산(joint filers)의 경우 연소득 1,000,000달러 이상 그리고 단 일신고(single taxpayers)의 경우 연소득 500,000달러 이상인 경우 부가세가 적용됨
 - 이번 내용은 오바마 행정부와 사전 합의를 거친 내용이며, 오바마 행정부도 본 방안에 동의함

26) 미국 백악관, <http://www.whitehouse.gov/blog/2011/09/21/buffett-rule-facts-and-fictions>

- (30% 최저한세의 제안) 2012년 1월 24일 국정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조정후소득금액이 1,000,000달러 이상인 자에 대해 30%의 최저한세(minimum tax)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2012년 2월 1일 민주당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토대로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1,000,000달러 이상 조정후소득금액에 30%의 최저한세(minimum tax)를 적용하는 법안(bill)을 소개함²⁷⁾

- 고소득층에 5.6%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일자리법 개정안은 공화당의 반대와 찬반 논란으로 인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7) Paying a Fair Share Act of 2012

III

OECD의 VAT 중립성 지침 발표

[조세동향 11-16]

- OECD의 재무위원회(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는 2011년 6월 28일에 VAT의 중립성 지침(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on Neutrality)을 발표함
- OECD 중립성 지침에 따르면, 조세제도는 거래(commerce)의 형태와 관련하여 중립적(neutral)이고 공정(equitable)해야 함
 - 즉,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은 세무상 이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고려에 의해서 내려져야 함
 - 결국, 유사한 거래를 수행하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업자는 유사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함
 -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VAT 세제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소비지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al)임
- 다음은 OECD의 중립성 지침에서 규정된 6가지의 지침임
- guideline 1 : VAT는 명시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사업자에 부담되어서는 아니됨
 - 조세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있으며, 과세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아니됨
 - ‘명시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한다는 뜻은 과세당국은 사업자에게 VAT를 부담시킬 수 있음을 의미함
- guideline 2 : 유사한 거래를 수행하는 유사한 상황의 사업자는 유사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함

- guideline 3 : VAT 규정은 VAT가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 재무적, 영업적, 환경적, 사회적, 법적 요인을 포함한 많은 요인이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VAT도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나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 되지 말아야 함

- guideline 4 : 조세부담 수준에 관해서 외국의 사업자는 조세를 부담하는 국가의 국내 사업자와 비교하여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아야 함
 - VAT 제도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불공평한 경쟁적 우위가 없도록 공정하고 공명정한 방법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국내 사업자에게 불공평한 경쟁적 우위가 있을 경우 국제무역을 위축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음

- guideline 5 : 외국 사업자가 VAT를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소비자가 일어나는 국가에서 과세하려는 VAT의 기본적 원칙은 VAT를 부과하는 국가들 간에 거의 동일함
 -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간에는, 지역 간 다른 역사, 전통, 정책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함
 - 따라서 정부는 외국 사업자와 관련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이러한 방법에는 부담한 VAT에 대한 직접적 환급제도 등이 있을 수 있음

- guideline 6 : 외국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상 요구사항이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불균형적이거나(disproportionate) 부적절한(inappropriate) 협력의무(compliance burden)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됨
 - 세무행정당국이 특정한 협력사항을 사업자의 유형별로 달리 부과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자나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 특정한 분야야 관련하여 다른 협력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특히, 법인격이 없는 외국 사업자 관련 업무는 세무행정상 위험을 가져옴
-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나 조세탈루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 하지만 세무행정당국은 정당하지 않은 차별을 막아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므로 외국 사업자에 대한 조치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Ⅱ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캐나다

1. 미국

가. 역외 은닉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 방안

[조세동향 11-16]

- 미국 과세당국은 역외 은닉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적·사법적·법률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2011년 4월과 5월 조세동향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해외계좌의 자진신고와 2013년부터 실시예정인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을 다룬 바 있음
 - 이번 조사는 자진신고제도와 해외 금융계좌 신고실시 외에 미국 정부에서 2012년 이후 실시 예정인 행정적, 사법적 그리고 법률적 노력을 파악하는 데 있음
 - 미 의회는 역외 은닉재산이 있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함
- 첫째,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무신고와 보고 자료를 통해 역외 은닉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
 - 외국기업과 거주자의 역외소득 신고와 관련 정보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외에 보관중인 장부와 기록의 보존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자료를 확보함
 - 납세자가 국외에 보관된 장부의 소유와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국세청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국세청은 역외 은닉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 확보한 증언과 증거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 둘째, 국세청은 해외 은닉자산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행하거나 국토안보부의 내부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는 국세청의 관련 자료요청 후 60일 이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납세자와 관계자에게 소환장을 발행하거나 납세자에게 공식 문서 요청서(formal document request: FDR)를 발행할 수 있음
 - 미국 역외 보관중인 문서라 하더라도 미국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소환이 가능함
 - 또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역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자회사나 지점을 소환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국세청은 필요한 정보의 확인을 위해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법률집행정정보시스템(The Treasury enforcement communications system: TECS)을 활용할 수 있음
 -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을 위반했거나 혐의가 있는 개인과 기업에 관한 정보를 관할하고 있음
 - 국세청 직원은 법률집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미국 거주자의 역외 재산과 개인의 미국 내 출입국 현황을 감시함

- 셋째, 타 국가에 보관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 정보교환협약 등을 체결하였으며, 역외 은닉자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내부 조직을 확대 개편함
 - 국세청은 조직 내 역외소득 및 국제조세를 담당하는 전문조직을 설치하였으며,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함
 - 2009년 고소득자와 이들이 소유한 기업의 세무신고를 감독하기 위해 국제 고소득 산업그룹(Global High Wealth Industry Group)을 설립하였음
 - 또한 미국 기업의 역외소득 신고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 및 국제조세부(Large Business and International Division)의 근무 인력을 800명 이상 보강하고 조직을 개편함

- 타 국가와 정보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과 상호사법공조협약을 체결하고 역외 재산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함
 - 미국 과세당국은 타 국가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 조세정보교환 조문을 두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조세회피 방지 조문을 두고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제한함
 - 타 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²⁸⁾을 체결하고 타국의 과세당국,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문서를 교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타 국가와 상호사법공조협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ies and laws, MLATs)을 체결하고 별도의 외교절차 없이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언과 각종 증거자료를 공유하도록 함
- 넷째, 독일, 영국, 프랑스와 중국에 국세청 공무원을 파견하여 정보교류 협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증거 자료를 조사하고 확인하도록 함
- 또한, 미국 국세청은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국세청과 조세회피 거래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JITSIC)에 참여함
- 다섯째,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를 소환하는 등 사법절차(judicial process)를 통해 역외 재산에 관한 정보를 확보함
- 외국에 있는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를 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하거나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 필요한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소환할 수 있음
 - 법원이 증인 또는 증거서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임
 - 사법공조협약 등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자료를 조사할 경우에 있어서 미국 법원은 해당 국가의 증인 또는 증거 조사의뢰장(letters rogatory)을 발부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함

28)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반면, 조세정보교환협정은 정보교환 프로그램의 이행을 주목적으로 함

나. 2011년 미국 일자리법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1-19]

-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9월 12일에 4,470억달러 규모의 2011년 미국 일자리법 개정안(the American Jobs Act of 2011)을 국회에 제출함
 - 개정안은 미국 내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와 성장을 위한 세금감면, 미국의 재건과 현대화를 위한 고용증대, 구직자의 고용촉진과 미국 노동자와 가정의 현금흐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또한, 고용증대와 세금감면으로 인해 감소한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 개정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2012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1) 고용증대와 성장을 위한 세제유인

- 2012년에 고용인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3.1%로 인하할 예정임
 - 미국은 이미 2011년도 고용인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에 한하여 기존 6.2%의 세율에서 4.2%의 세율로 1년간 인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고용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부담을 모두 인하하는 것임
 - 단, 고용주에 대한 사회보장세 감면에는 허용한도가 존재하여, 급여가 5백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감면은 허용되지 않음
 - 감면은 사업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됨
- 2011년 4분기와 2012년 중 신규채용이나 임금인상으로 발생하는 고용주의 사회보장세를 5천만달러의 급여 증가분까지 면제할 예정임
 - 직전 사업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해 고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액 증가분에 대하여 고용주의 사회보장세를 전액 면제하나, 5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급여 증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함

- 신규 공장 및 설비에 투자한 자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상 전액 손금으로 공제하는 일시 규정을 2012년까지 연장함
 - 대기업과 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회사가 신규 공장과 설비에 투자한 금액을 투자한 연도에 전부 비용 처리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임
 -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11년에 투자한 금액은 전액 손금으로 공제되며 2012년부터 투자액의 50%만 손금으로 인정됨
- 장기 미취업 퇴역 군인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장기 미취업 부상 군인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함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중인 미취업 퇴역 군인을 고용할 경우 5,600달러(4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중인 미취업 퇴역 군인의 고용에 있어서 2,400달러)까지 세액 공제(Returning Heroes Tax Credit)를 적용함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중인 미취업 부상 군인을 고용할 경우 현재 4,800달러의 세액공제(Wounded Warriors Tax Credit)를 9,600달러까지 확대함
- 장기 미취업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Long Term Unemployed Workers Work Opportunity Tax Credit)를 신설함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중인 미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4,000달러까지 세액공제함

2) 재정수입의 확충 방안

- 고소득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와 특정 기타 지출 항목(certain other tax expenditure)을 과세소득의 28%로 제한함
 - 단, 부부합산 조정 후 총소득이 250,000달러 미만(기타의 경우 200,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 위 개정내용은 36% 또는 39.6%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 서비스의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파트너십 이자수익은 일반 과세소득(ordinary income)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십 이자수익에 적용하던 조세혜택을 폐지함
 - 현행 세법에서는 서비스의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파트너십 이자수익을 자본이득(capital gains)으로 분류하고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함
-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회사전용기(corporate jets)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일반 승객 운송 비행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일치시킴으로써 기존 회사전용기에 대한 조세혜택을 폐지함
 -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은 즉시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 세무상 손금으로 처리됨
 - 현행 세법에서 회사전용기는 승객운송 비행기보다 가속 상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특례규정의 폐지를 제안함
- 석유 및 가스산업에 적용되는 손금산입과 세액공제 혜택 등 조세특례 규정을 폐지함
- 이중지위납세자(dual capacity taxpayers)에게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개정함
 - 이중지위납세자가 외국정부로부터 다른 경제적 혜택을 받는 대가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이중지위납세자가 아닌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다. 미국의 경제성장 및 재정적자 감축 방안(The President's Plan for Economic Growth and Deficit Reduction)

[조세동향 11-20]

-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9월 19일에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여기에 1.5조달러 상당의 조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음
 - 세법개정안은 재정적자 감소 외에 크게 네 가지 원칙을 기초로 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임
 - 세율인하,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조세지원의 폐지, 고용증대 및 버핏룰(Buffett Rule)²⁹⁾에 따른 부자증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29) 소득이 1백만달러 이상인 자가 중산층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원칙

〈표 I-1〉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법개정안

(단위: 십억달러, %)

회계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2-2016	2012-2021
개인소득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한 방안													
-고소득가구의 감세 법 및 유산세 폐지		-13	-47	-63	-77	-91	-101	-108	-115	-122	-130	-290	-866
일자리법 개정안													
-고소득자의 항목별 공제한도(28%) 설정	-	-	-22	-36	-40	-43	-47	-50	-54	-58	-61	-140	-410
-기타 개정사항	-	-	-6	-9	-9	-8	-8	-8	-7	-7	-7	-32	-69
기업의 조세허점 근 절 및 과세대상 확대													
-후입선출법의 폐지	-	-	-3	-6	-6	-6	-6	-6	-6	-6	-6	-21	-52
-저가법의 폐지	-	-	0	-1	-2	-2	-1	0	0	0	0	-5	-8
-석탄 산업의 조세 혜택 폐지	-	-	0	0	0	0	0	0	0	0	0	-1	-2
보험회사 및 보험상 품에 대한 처리방법	-	-	0	-1	-1	-1	-1	-1	-2	-2	-3	-3	-12
국제조세 시스템의 개정													
-이연수익에 대한 이 자비용의 이연처리	-	-	-4	-6	-6	-6	-7	-3	-1	-1	-1	-22	-36
-외국납부세액공제 에 대한 한도 개정	-	-	-3	-5	-6	-6	-6	-6	-6	-7	-7	-20	-53
-해외이전 무형자산 에 대한 초과수익 과세	-	-	-1	-2	-2	-2	-2	-2	-2	-2	-2	-8	-19
-무형자산 양도를 통 한 소득이전의 제한	-	-	0	0	0	0	0	0	0	0	0	0	-1
-해외 관계사를 통 한 부채사용 제한	-	-	0	0	0	0	0	0	0	-1	-1	-1	-4
기타													
-슈퍼펀드세의 부활	-	-	-1	-2	-2	-2	-2	-2	-2	-2	-2	-7	-19
-실업보험 부속세 (0.2%)의 영구화	-	-1	-1	-1	-1	-1	-1	-2	-2	-2	-2	-7	-15
-고용인과 자영업자 분류규정	-	-	0	-1	-1	-1	-1	-1	-1	-1	-1	-2	-8
합계	0	-14	-89	-134	-154	-171	-185	-191	-200	-211	-224	-562	-1,573

자료: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Living Within Our Means and Investing in the Future: The President's Plan for Economic Growth and Deficit Reduction, 2011. 9

- 이번 발표한 개정안은 2012년 예산안³⁰⁾과 2011년 9월 12일에 발표한 일자리법 개정안³¹⁾에서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세법개정안은 일반적으로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1) 개인소득세(individual tax code)의 공정한 과세를 위한 방안

- 부부합산 연소득 250,000달러(기타 연소득 200,000달러) 이상인 고소득 가구에 대한 2001년도 및 2003년도 감세법 적용을 폐지하고 유산세(estate tax)의 세율과 면세금액을 2009년 수준으로 개정함
 - 2001년도 및 2003년도 감세법이 폐지되면 소득세의 6단계 누진세율 중 33%와 35%의 세율이 36%와 39.6%로 인상되고 장기자본이득과 배당에 대한 세율이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될 것임
 - 개정안의 적용으로 유산세(Estate tax)의 면세한도가 2011년 현재 5백만달러에서 3.5백만달러로 감소하고, 유산세의 최고세율은 35%에서 45%로 증가할 것임
 - 본 개정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8,660억달러의 적자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2) 기업의 조세허점(business loophole) 근절 및 과세대상 확대

- 재고자산 평가방법에서 후입선출법(last-in, first-out, LIFO)³²⁾을 폐지함
 - 이는 지속적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산업(예: 석유, 가스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저가법(the lower-of-cost-or-market and subnormal goods methods of inventory accounting)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를 폐지함

30) 조세동향 11-05/2011. 3 참조

31) 일자리법 개정안 내용은 조세동향 11-19를 참조하기 바람

32) 후입선출법은 판매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나중에 매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하는 시장에서 후입선출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경우 다른 평가방법과 비교해 과세표준이 작게 계산됨

- 기존 석탄 산업(coal preferences)에 부여한 조세혜택을 폐지함
 - 현행 세법에서 인정하는 탐사 및 개발비용(exploration and development costs)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혜택을 폐지함

3) 보험회사와 보험상품의 세무처리방법 개정

-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 계약의 매각 및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실을 과세당국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보고대상을 확대함
 -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무신고를 증가시켜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회사소유 생명보험(corporate-owned life insurance, COLI)과 관련된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대상을 확대함
- 생명보험회사의 특별계정(special account)에 대한 배당세액공제(dividends-received deduction, DRD)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함

4) 미국 국제조세 시스템(the U.S. international tax system)의 개정

- 과세이연이 허용된 해외 투자수익과 관련된 이자비용을 이월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함
 - 현행 세법에서 해외투자수익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비용은 전액 공제하고 있어 기업이 조세절감을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방안을 제시한 것임
-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개정함
 - 개정안에서 한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납세의무자의 자회사 전체 연결이익, 연결외국납부세액과 연결이익잉여금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함

-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피지배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에 무형자산을 이전하고 초과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미국 내 수익으로 간주함
 -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무형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임
- 관계회사 간 무형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일정요건을 만족한 경우 모든 관계회사 간 양도거래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함
-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국외 관계회사에 지급보증을 하거나 관계회사의 부채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관련 이자비용의 공제를 제한함

5) 기타

- 1995년 12월 31일에 폐지된 유해물질 슈퍼펀드(the Hazardous Substance Superfund)의 투자자금에 부과하던 세금을 복구하는 방안을 제시함
 - 본 규정은 위험도가 높은 유해물질 소각장의 복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201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21년까지 부과될 것임
 - 개정안의 적용으로 원유(crude oil)와 수입 석유제품(imported petroleum products)에 배럴당 9.7센트의 개별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될 것임
 - 유해 화학물질에 22센트부터 톤당 4.87달러까지 특별소비세가 부과됨
 - 공급원료로 수입되는 유해 화학물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국내 생산품과 동일한 금액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됨
 - 기업의 수정 후 최저한세 소득이 2백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0.12%의 법인환경소득세(a corporate environmental income tax)가 부과됨
- 그 외 연방실업보험 부담금에 추가되는 부가세와 고용인과 자영업자의 분류에 대한 특별규정³³⁾을 개정함

33) 현행 세법상 고용인 또는 자영업자의 분류는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현재 일시적으로 0.2%의 세율로 부과하고 있는 연방실업보험 부담금에 대한 부가세(the net federal unemployment insurance surtax)를 영구화함
- 국세청 조사결과 고용인(employee)과 자영업자(a self-employed person)의 분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향후 처리는 국세청에서 정한 적절한 분류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라. 미국 2012년 물가인상 조정 내역 발표

[조세동향 11-22]

- 미국 국세청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소득공제 한도 등의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세, 유산세 및 증여세, 연금보험에 관한 각종 비과세·감면 및 납부금액을 조정하여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난 10월 20일 발표하였음
 - 이번 발표에 포함된 내용은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 개인소득세 부문에 있어서 인적공제(the personal exemption), 표준공제액(the standard deduction amounts) 등을 인상함
 - 2012년 적용될 1인당 인적공제액은 3,800달러로 전기 대비 100달러 인상됨
 - 10년 전인 2001년 1인당 인적공제액은 2,900달러이었으며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50~100달러씩 인상하거나 전기 금액을 유지하면서 11년간 900달러의 금액이 인상되었음
 - 납세자의 신고지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표준공제액은 신고지위별로 15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인상됨
 - 2012년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표준공제: 11,900달러(전기 대비 300달러 인상됨)
 - 2012년 단일신고의 경우 표준공제: 5,950달러(전기 대비 150달러 인상됨)
 - 2012년 세대주의 경우 표준공제: 8,700달러(전기 대비 200달러 인상됨)
 -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2011년 69,000달러에서 2012년 70,700달러로 1,700달러의 금액이 인상됨
 - 장기 국외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외국원천소득에 대한 공제액(foreign earned income

일정 요건을 만족한 경우 고용인을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였더라도 재분류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 deduction)은 2012년 95,100달러로 전기보다 2,200달러 인상된 금액임
- 의료저축계좌(Medical Savings Accounts; MSAs)에 불입한 금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이번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한도를 인상함
 - 본인 보상보험(self-only coverage)의 경우
 - 최소연간공제액(minimum annual deductible): 2,100달러
 - 최대연간공제액(maximum annual deductible): 3,150달러
 - 최대연간 본인부담금(maximum annual out-of pocket expenses): 4,200달러
 - 가족 보상보험(family coverage)의 경우
 - 최소연간공제액(minimum annual deductible): 4,200달러
 - 최대연간공제액(maximum annual deductible): 6,300달러
 - 최대연간 본인부담금(maximum annual out-of pocket expenses): 7,650달러
- 유산세(estate tax)의 통합세액공제 한도를 포함하여 유산세와 관련된 한도금액을 인상함
- 2012년 유산세의 통합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한도는 5,120,000달러로 전기 대비 120,000달러의 금액이 인상됨
 - 한편 2012년 증여세의 연간공제액(annual exclusion for gifts)은 13,000달러로 전기와 동일하게 유지됨
 - 유산세에 있어서 특정재산(qualified real property)의 특별평가방법(the special use valuation method)에 따라 감소하는 과세표준 금액의 한도가 전기보다 20,000달러 인상된 1,040,000달러로 결정됨
- 적격 주차비용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를 2012년 240달러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전기보다 10달러 인상된 금액임
- 본 제도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급한 적격주차비용을 매월 240달러를 한도까지 비과세하는 규정임
- 연금에 있어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한 결과 2012년 각종 연금과 관련한 한도 금액이 인상됨

- 개인은퇴구자(Roth IRA) 불입가능 금액이 부부합산의 경우 173,000달러로 전기보다 4,000달러 인상되었고, 단일 및 세대주의 경우 110,000달러로 전기보다 3,000달러 인상됨
- 개인은퇴구자(traditional IRA) 불입액에 대한 공제액이 부부합산의 경우 92,000달러로 전기보다 2,000달러 인상되었고, 단일 및 세대주의 경우 58,000달러로 전기보다 2,000달러가 인상됨
- 확정기여형연금(defined contribution plans)의 연간 납입한도가 2011년 49,000달러에서 2012년 50,000달러로 결정되어 전기 대비 1,000달러가 인상됨

2. 캐나다

가. 캐나다 재무부의 경제성장 및 고용촉진법 발표

[조세동향 11-21]

- 캐나다 재무부는 10월 4일에 2011년 예산안³⁴⁾을 기초로 경제성장 및 고용촉진법(Keeping Canada's Economy and Jobs Growing Act)안을 발표함
 - 개정안은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 지역사회 지원, 가게 지원, 교육 및 훈련분야에 대한 투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캐나다는 2009년 이후 60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을 정도로 현재 주요 7개국(G-7) 중에서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향후 2년간 G-7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성장세는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을 통해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임

34) 2011년 3월 22일 캐나다 재무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야당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내각불신임 결정에 따라 캐나다 의회는 해산되었음. 이후 5월 2일 총선을 실시한 결과 여당인 보수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고, 6월 6일에 예산안을 의회에 다시 상정함. 이는 기존 예산안과 비교해 일부 지출부문에 수정사항은 있었으나 세법 부문은 기존 예산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유지하였으며, 이번 발표한 법안은 6월 6일 발표한 예산안의 세법개정 사항을 토대로 하고 있음. 예산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조세동향 11-07/2011. 04를 참조하기 바람

-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임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녹색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관세간소화 방안 등을 제시함
 - 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임시 고용증대 세액공제(a temporary Hiring Credit for Small Business)를 신설함
 - 소기업이 부담한 고용보험료가 전기 대비 증가한 경우 그 차이금액을 1,000캐나다달러 까지 공제함
 -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함
 - 청정에너지의 발생(generation)과 보존(conservation) 설비에 대한 가속상각이 적용 되는 범위를 확대함
 - 투자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적격 환경 투자신탁(qualifying environmental trusts)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 광물탐사 세액공제(the 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를 1년간 연장함
 - 개정안에 따라 2012년 3월 31일 이전에 도관 주식투자에 투자한 자(flow-through share investor)는 광물탐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2012년 1월 1일부터 무역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법 간소화를 추진함
 - 관세율이 동일한 항목을 통합하고 최종소비에 대한 특례규정³⁵⁾(end-use provisions)을 삭제하여 관세부과 절차를 간소화함
 -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배송되는 저가의 비영리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절차를 간소화함
 - 제조 및 가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 및 가공기계(manufacturing and processing machinery)에 대한 가속상각 규정을 2년 연장함
- 지역사회(communities) 지원방안으로 자원봉사 소방관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부금 단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자원봉사 소방관 세액공제(Volunteer Firefighters Tax Credit)를 신설함

35) 관세분류표에 따라 수입관세를 결정한 후 수입 재화가 캐나다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등의 일정 요건하에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인하되는 규정임

- 해당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은 자가 연간 200시간 이상 소방활동에 봉사한 경우 연간 3,000캐나다달러의 15% 상당의 환급불가 세액공제(non-refundable credit) 혜택을 부여함
 - 적격 기부금 단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기부금을 이용한 탈세를 줄이기 위해 통합 패키지를 소개하고 납세자가 법정 기부금 단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가계(families) 지원방안으로 가족 돌봄 세액공제와 어린이 예능활동비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가족부양자의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를 폐지함
- 가족 돌봄 세액공제(the Family Caregiver Tax Credit)를 신설함
 - 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는 자에게 연간 2,000캐나다달러의 15% 상당의 환급불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어린이 예능활동비 세액공제(the Children's Arts Tax Credit)를 도입함
 - 어린이의 예술, 문화, 레크리에이션과 개발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어린이 1명당 500캐나다달러까지 공제하는 방안임
 - 가족부양자의 의료비 세액공제(the Medical Expense Tax Credit)에 대한 한도를 폐지함
 - 부양자(dependent relative)의 의료비 지출액 중 10,000캐나다달러까지 공제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금액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교육 및 훈련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방안으로 교육비 세액공제(the Tuition Tax Credit)와 교육비와 교재비 세액공제(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Tax Credits)의 범위를 확대함
- 직업, 무역과 전문자격증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 교육비와 교재비 세액공제 대상인 외국대학에 등록한 자의 교육기간을 현행 13주에서 3주로 개정함으로써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

II

유럽

1. 그리스

가. 그리스 긴축정책 발표

[조세동향 11-21]

- 그리스 정부는 조세수입 확충을 위한 세제조치가 포함된 긴축정책을 2011년 9월 21일에 발표함
 - 이번 긴축정책은 그리스가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IMF) 및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1,1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며 이행하기로 합의한 재정적자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임
 - 그리스 정부는 긴축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약 143.2억유로 삭감하고, 140.9억유로에 달하는 조세수입을 확충할 계획임
- 세제조치는 연대세(solidarity levy) 부과, 재산세(property tax)의 한시적 부과, 소득세 면세점 인하,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됨
 - 가구 소득에 1~5%의 연대세가 부과될 예정임
 - 연 가구 소득 12,000~20,000유로: 1% 적용
 - 연 가구 소득 20,000~50,000유로: 2% 적용
 - 연 가구 소득 50,000~100,000유로: 3% 적용
 - 연 가구 소득 100,000유로 초과: 4% 적용
 - 입법자(lawmakers) 및 공직자(public office holders): 5% 적용
 - 연대세 부과를 통해 약 13.8억유로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2011~2013 과세연도에 한해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임

- 1㎡당 평균 4유로의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약 20억유로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단, 실업자 또는 연소득이 12,000유로 미만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됨
 - 2011 과세연도부터 소득세의 면세점이 12,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인하될 예정임
 -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될 예정임
 - 표준세율: 19%에서 23%로 인상
 - 경감세율: 11%에서 13%로 인상
 - 초경감세율: 5.5%에서 6.5%로 인상
 - 요식업 및 주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 13%에서 23%로 인상
 - 요트, 수영장, 차량에 대해 특별소비세(luxury levy)가 부과될 예정임
- 건축정책에는 세제조치 이외에도 공무원에 대한 임금삭감 및 연금지급액 삭감 계획이 포함됨
- 그리스 정부기관 공무원 중 30,000여명에 대해 2011년 12월 말까지 임금의 60%만 지급
 - 월 연금 지급액이 1,2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액의 20%를 삭감
 - 55세 미만의 납세자에 대한 월 연금 지급액이 1,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액의 40%를 삭감

2. 네덜란드

가. 네덜란드의 회사 차량의 개인적 공급에 관한 VAT 규정 개정

[조세동향 11-14]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11년 7월 1일부터 회사 차량의 개인적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와 직원에게 동일한 방식의 VAT 세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표함

- 이는 2011년 6월 1일에 Haarlem시 하급법원(lower court)의 친환경 차량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VAT의 세제혜택은 차별적이라는 결정으로 인함
 - 새로운 회사 차량의 개인적 공급관련 VAT 세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임
- 현행 제도에서는 회사 차량의 개인적 공급에 대한 사업자(entrepreneur)와 직원(employee)에게 적용되는 VAT 세제가 다름
- 사업자 : 회사차량의 개인적 공급은 차량 가격에 따라 고정된 VAT 세율이 적용됨
 - 세율은 차량가격에 따라 5%, 11%, 25%, 35%로 고정되어 있음
 - 개인적으로 운행한 거리가 500km에 미달할 경우에는 VAT를 과세하지 않음
 - 직원 : 차량의 가격에 따라 VAT가 고정되나 친환경 차량 여부에 따라 세율이 변함
 - 일반 차량의 경우, 차량가격에 따라 25%, 35%의 세율을 적용함
 - 친환경 차량의 경우, 차량가격에 따라 5%, 11%의 세율을 적용함
 - 개인적으로 운행한 거리가 500km에 미달할 경우에는 VAT를 과세하지 않음
 - 종업원이 출근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도 개인적 공급에 포함함
- 개정안에 의하면, 회사 차량의 개인적 공급에 관한 VAT 세제는 사업자와 직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VAT 세율이 적용됨
- 즉, 사업자와 직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차량의 실제가격에 표준세율인 19%를 적용하여 과세함
 - 한편, 개정안에서도 종업원이 출근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는 개인적 공급에 포함함

나. 네덜란드의 외국신탁·협회에 대한 조세사면(tax amnesty) 실시

[조세동향 11-18]

-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2011년 8월 18일에 외국에 설립한 신탁(trusts)과 협회(foundations)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사면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Decree No. BLK/129M을 발표함
- 이 시행규칙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됨

- 2010년 세법 개정으로 외국에 설립된 신탁과 협회를 통한 조세회피가 어려워짐
 - 소득세제: 외국의 신탁과 협회는 2010년부터 ITA(소득세법) art. 2,14a에 따라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않고, 그 자산은 신탁 설정자나 협회 설립자에게 귀속됨
 - 따라서 외국신탁·협회가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힘들어짐
 - 상속세제 : 네덜란드의 거주자였던 신탁 설정자나 협회 설립자의 사망시, 외국신탁과 외국협회의 자산은 ITA(상속세법) art. 16.에 따라 상속인(heir)에게 귀속됨
 - 즉, 상속인이 네덜란드에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이로 인한 조세회피가 힘들어짐

- 2010년 법률 개정으로 인해 외국에 설립된 신탁과 협회의 청산이 많아짐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탁과 협회가 과세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자 납세자에게 사면절차를 제공함
 - 조세사면의 시행규칙은 2011년 12월 1일 이전에 청산이 시작된 경우의 조세사면에 대해서 적용됨
 - 조세사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탁과 협회가 2년 이전에 설립되지 않은 경우, 형법상 처벌(penalty)이 없음
 - 신탁과 협회가 2년 이전에 설립된 경우, 형법상 처벌이 경감됨

3. 노르웨이

가. 노르웨이 2011년 수정 예산안

[조세동향 11-15]

- 계좌 유지 규정,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제한, 파트너십의 비과세 요건의 내용이 수정·추가된 노르웨이 2011년 수정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함
 - 노르웨이 정부가 2011년 5월 13일 의회에 제출한 수정 예산안이 2011년 6월 17일 의회를 통과함
 - 수정 예산안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유효함

- 수정 예산안은 기존 예산안과 비교하여 유럽경제연합(European Economic Area, 이하 EEA) 국가로의 이전시 계좌 유지 규정,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제한, 파트너십의 비과세 요건의 내용이 수정·추가됨

1) EEA 국가로의 이전시 계좌 유지 규정

- 노르웨이 납세자가 EEA 국가로 이전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좌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임
 - 개정 전 노르웨이 납세자는 EEA 국가로 이전시 보유하고 있던 계좌를 폐지해야 하며, 계좌 잔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었음
 - 계좌 유지 규정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납세자가 이전하고자 하는 EEA 국가의 납세자가 되어야 하고
 - ② 납세자가 이전하고자 하는 EEA 국가와 노르웨이 간 납세협력의무 조항이 포함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2)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제한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차기 사업연도로 이월공제하기 전에 적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추가됨
 - 명문 규정의 도입으로 납세자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조세전략(tax planning)을 규제할 수 있게 됨

3) 파트너십의 비과세 요건

- 파트너십 주식가치의 90% 이상이 EEA 역내 기업의 주식인 경우, 해당 파트너십으로부터 달성한 자본이익 또는 손실은 비과세 또는 손금불산입됨
 - 이를 '90% 요건(the 90% Requirement)'이라 함

- 90% 요건에 보유기간에 대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일부 납세자들은 이 요건을 자의적으로 활용하여 조세를 회피해 옴
 - 자본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EEA 역외 기업의 주식에 10% 이상 투자하여 자본손실을 손금산입받음
 - 자본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다시 90% 요건을 충족시켜 자본이익을 비과세함
- 이와 같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년간의 보유요건을 신설함
 - 90% 요건이 최근 2년간 충족되어야만 자본이득 또는 손실의 과세처리 변경이 가능함
 - 즉, 자본이득 또는 손실에 대해 비과세 또는 손금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90%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반면, 이를 과세하거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90% 요건이 불충족되어야 함
 - 납세자가 과세기간마다 자의적으로 과세요건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됨

4. 러시아

가. 러시아 이전가격세제 개정법 발표

[조세동향 11-17]

- 러시아 정부는 기존의 이전가격세제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이전가격세제 개정법 (Law 227-GZ)을 2011년 7월 22일 공식 발표함
 - 개정법은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는 ‘OECD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을 반영하였음
 - 개정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 특수관계자의 범위

-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현 이전가격세제보다 확장됨

- 개정법은 특수관계자를 11개 범주로 구분하여 규정함
- 대표적으로 지분을 25% 초과 보유 기업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 러시아 법원에는 특정 거래가 11개 범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2) 특수관계거래의 범위

- 개정법은 특수관계거래의 범위를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특수관계자 간 국외거래(cross-border transactions) 및 국내거래(domestic transactions)’로 제한함
 - 이는 현 이전가격세제상 특수관계거래의 범위보다 축소된 것임
 - 국외거래는 거래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간 수행된 모든 국외거래가 특수관계거래에 해당되며, 제3자 중개업자를 통한 국외공급거래도 이에 해당됨
 - 단, (i) 원유, 귀금속과 같이 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국외거래와 (ii) 러시아 재무부의 감시명단(blacklist)에 오른 국외거주자가 수행한 국외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이 6천만루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거래에 해당됨
 - 국내거래는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거래에 해당되며, 거래별로 상이한 거래금액 기준이 적용됨
 - 특수관계자 간 국내거래로부터 창출된 연소득금액이 2012년 30억루블, 2013년 20억루블 및 2014년 이후 10억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 간 국내거래로부터 창출된 연소득금액이 6천만루블을 초과하고 법에 열거된 특정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 간 국내거래로부터 창출된 연소득금액이 1억루블을 초과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귀속소득에 대한 통합세(unified tax on imputed income) 또는 농업통합세(unified agricultural tax)를 납부하는 경우 특수관계거래에 해당됨

3) 정보의 수집

- 정상가격 산출에는 공식적으로 시장에 공개된 재무자료만 이용 가능하며, 국외기관의

재무자료는 국내 재무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만 사용 가능함

- 따라서 국내 비교가능회사의 검색이 우선 실시되어야 하며, 국내 비교가능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외 비교가능회사의 이용이 허용됨

4) 정상가격산출방법

- 개정을 통해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 Net Margin Method, TNMM) 및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PSM)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포함됨
 - 현 이전가격세제상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재판매가격방법(Resale price method) 및 원가가산방법(Cost Plus Method)만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해당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TNMM 및 PSM 방법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추가됨
 - TNMM 및 PSM은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산출방법임

5) Safe Harbor 기준의 폐지

- Safe Harbor 기준이란 납세자가 특수관계거래에 적용한 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이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전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임
- 이전가격 개정을 통해 Safe Harbor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정상가격범위(Arm's Length Range)를 기준으로 이전가격과세가 이루어질 것임
 -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가격을 의미함
 - 정상가격범위란 사분위범위³⁶⁾를 이용하여 정상가격을 일정 범위 형태로 산출한 값임
 - 사분위범위를 이용한 정상가격범위 산정은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며,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고 있음

36)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란 통계 산포도의 하나로서, 관측값을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위 25%와 하위 25%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를 의미함. 사분위범위는 관측값 중 양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아 최댓값과 최솟값을 범위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측정값이 왜곡될 가능성이 낮음

-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이 시장가격범위 내에 위치할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함
- Safe Harbor 기준하에서 (가격의 변동성이 높지 않은 한) 납세자는 거래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이를 정상가격의 20% 이내가 되도록 거래가격을 설정하여 이전가격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았음
- 그러나 정상가격범위는 통계적 수치이므로 산정방법이 보다 객관적이고,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범위 내에 위치해야 이전가격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이전가격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됨

6) 이전가격문서화 규정

- 특수관계거래로부터 창출된 소득이 일정 금액을 상회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이전가격문서를 구비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신설됨
 - 개정법에는 이전가격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의 내용도 열거되어 있음
- 이전가격문서 구비 대상 납세자는 특수관계거래가 수행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과세당국에 특수관계거래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러시아 과세당국은 검토대상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까지 납세자에게 이전가격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이전가격문서를 제출해야 함

7) 이전가격 조정 및 가산세

- 개정법상 납세자는 선정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자발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향의 이전가격조정(down adjustments)은 허용되지 않음
 - 단,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중 일방에 이전가격조정이 발생함에 따

라 다른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반대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s)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20%, 2017년 이후부터는 40%의 가산세가 이전가격조정에 따른 미납부세액에 부과됨

8)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 이전가격세제 개정에 따라 “주요 납세자(major taxpayers)”에 한하여 과세당국에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s, 이하 ‘APA’)를 신청할 수 있게 됨
 - 주요 납세자란 연 납부세액이 10억루블을 초과하거나 연소득금액 또는 자산가액이 200억루블을 초과하는 납세자임
 - 납세자가 APA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6개월 간 APA 신청서를 검토 가능하며 검토기간은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 승인된 APA는 3년간 유효하며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은 2년까지 연장 가능함

5. 루마니아

가. 루마니아의 세법 개정

[조세동향 11-19]

- 루마니아에서는 법인세액 신고 규정 및 소득세법상 외국인의 국내외 원천소득 과세요건을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세법(Government Ordinance No. 30)을 2011년 9월 2일에 관보(Official Gazette no. 627)에 게재함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개정세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1) 법인세법 - 법인세액 신고 규정의 개정

- 개정 전 법인세법상 납세자는 실제소득에 기초하여 산정한 법인세액을 분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함
 - 단, 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직전연도 과세소득에 물가성장률을 고려하여 산정한 법인세액을 분기별로 선납(advance payments)한 후, 연 1회만 신고·납부하면 됨
- 개정법에 따르면 법인 납세자는 법인세액을 i)분기별로 신고·납부하거나 ii)분기별로 선납(advance payments)한 후 연 1회 신고·납부하는 두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즉, 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만 허용되던 특별 규정이 모든 법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도록 개정됨
 - 이는 분기별 법인세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조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임

2) 소득세법 - 거주자의 요건 변경

- 개정 전 소득세법상 외국인의 국내외 원천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거주자 요건을 연속 3년 이상 충족시켜야 함
 - 외국인의 생계 근거지가 국내이거나, 연속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 요건이 충족됨
 - 외국인이 거주자 요건을 연속 3년 이상 충족시킨 경우, 그 다음해부터 외국인의 국내외 원천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됨
- 세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이 거주자 요건을 1년만 충족하더라도 그 다음해부터 외국인의 국내외 원천소득이 국내에서 과세 가능하게 됨

6. 스위스

가. 독일-스위스 및 영국-스위스의 역외탈세 방지 조세협약 체결

[조세동향 11-22]

- 독일-스위스 및 영국-스위스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스위스 은행 무기명 계좌(undeclared account)에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세협약(tax agreement)을 체결함
 - 독일-스위스 간 조세협약은 2011년 9월 21일에, 영국-스위스 간 조세협약은 2011년 10월 6일에 각각 서명되었으며, 두 조세협약 모두 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번 조세협약의 체결은 스위스 무기명 계좌를 통한 독일 및 영국 탈세혐의자들의 역외탈세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 간에 지속되어 온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임
 - 독일, 영국 및 스위스 정부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스위스 은행 무기명 계좌를 통한 역외탈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조세협약의 체결을 추진한 반면,
 - 스위스 은행과 무기명 계좌 보유 고객들은 고객정보 보호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조세협약 체결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음

1) 독일-스위스 간 조세협약

- 독일-스위스 간 체결된 조세협약에 따르면 2013년 초부터 독일 거주자가 스위스 은행에 보유하는 무기명 계좌 소득에 대해 스위스 정부가 26.3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독일에 지급해야 함
 - 26.375%는 독일 내 원천징수세율과 동일한 세율임
 - 원천징수세율은 향후 독일 내 세율변동에 연동하여 변경될 계획임
 - 현재 독일 거주자가 보유한 스위스 은행 무기명 계좌 소득은 2,000억스위스프랑(약 2,220억달러) 가량으로 예상됨

- 독일 거주자가 스위스 무기명 계좌 소득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보유 자산을 자진신고(voluntary disclosure)하거나 자산에 19~34%의 세율을 소급 적용해 산정된 세금을 일괄납부(lump-sum payment)해야 함
 - 일괄납부시 적용세율은 계좌 보유기간, 최초 및 최종 계좌 잔액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 스위스 은행들은 일괄납부에 따른 세액에 해당하는 20억스위스프랑(약 22.2억달러)을 독일에 선지급할 계획임
- 조세협약에 포함된 정보교환 규정에 따라 독일 정부는 독일 탈세혐의자의 스위스 은행계좌 재무자료를 스위스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이번 조세협약 체결 전에는 독일 정부가 거주자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을 알아야만 자료 요청이 가능했으나, 조세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자료 요청 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만으로도 재무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됨
 - 조세협약이 시행되는 최초 2년간은 자료요청 가능횟수가 연 750~999회로 제한됨
 - 이후 매 2년간 자료요청 가능횟수를 최대 20%의 범위 내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계획임

2) 영국-스위스 간 조세협정

- 영국-스위스 간 체결된 조세협약에 따르면 2013년 초부터 영국 거주자가 스위스 은행에 보유하는 무기명 계좌 소득에 대해 스위스 정부가 27~4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영국에 지급해야 함
 - 자본이득에는 27%, 배당소득에는 40%, 이자 및 기타 소득에는 48%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원천징수세율은 향후 영국 내 세율변동에 연동하여 변경될 계획임
 - 영국 거주자 중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non-UK domiciled individual 또는 non-dom)'가 스위스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는 선택에 의해 영국 내로 송금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remittance basis taxation)될 수 있음
 -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가 영국 내로 송금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위해서는 스위스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에 증명서(certification)를 제출해야 함
 - 스위스 금융기관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non-dom)로 보지 않아, 자본이득에 28%, 배당소득에 42.5%, 이자 및 기타 소득에 5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 영국은 조세협약 체결로 약 30억~60억파운드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독일-스위스 조세협약과 같이 영국 거주자가 스위스 무기명 계좌 소득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보유 자산을 자진신고하거나 자산에 19~34%의 세율을 소급 적용해 산정된 세금을 일괄납부해야 함
- 스위스 은행들은 일괄납부에 따른 세액에 해당하는 5억스위스프랑(약 5.55억달러) 을 영국에 선지급할 계획임
 - 자진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스위스 은행은 스위스 과세당국에 영국 거주자의 신상 정보 및 계좌 정보를 매달 제출해야 함
 - 영국 거주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영국의 납세번호(tax reference number)
 - 스위스 은행명 및 주소
 - 계좌 고객번호
 - 연간 계좌 잔액 및 12월 31일 시점의 자산명세서(statement of assets)
- 조세협약에 포함된 정보교환 규정에 따라 영국 정부는 영국 탈세혐의자의 스위스 은행계좌 재무자료를 스위스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독일-스위스 간 조세협약과 동일하게 영국도 자료요청 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만으로 스위스에 재무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됨
 - 자료요청 가능횟수는 연 500회로 제한됨

- 이 외에도 스위스는 조세협약 실행 이후 스위스 무기명 계좌의 자금이 이동한 관할구역(jurisdiction)에 대한 정보를 영국에 제공할 예정임
- 스위스 정부는 조세협약이 실행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 영국 거주자의 스위스 무기명 계좌 자금이 가장 많이 이동한 10개 관할구역 정보를 수집하여 영국에 제공할 예정임

7. 스웨덴

가. 스웨덴 2012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11-20]

- 스웨덴 정부는 주로 감세정책의 내용이 포함된 2012 예산안(The Budget for 2012)을 2011년 9월 20일에 의회에 제출함
- 2012 예산안은 경제성장 및 고용촉진을 통한 안정적 재정기반 유지를 목표로 함
- 예산안에 포함된 세제조치에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분야의 각종 공제혜택 확대 및 요식업(restaurant and catering services)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등 주로 감세정책의 내용이 포함됨
- 개인 및 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부양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함임
-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1) 법인세 분야

- 투자펀드(investment funds)의 과세방식이 변경됨
- 스웨덴은 현재 투자펀드와 관련하여 펀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번 예산안에는 투자펀드의 이익 대신 평가기준일의 펀드 자산가액의 0.4%를 자본이득으로 보아 ‘주주에게 직접 과세’ 하는 방안이 포함됨

□ 연구개발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됨

2) 개인소득세 분야

□ 폐쇄회사(closely-held corporation)의 주주가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낮은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한도가 인상됨

- 스웨덴은 폐쇄회사의 주주가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20%³⁷⁾의 낮은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되나, 배당금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세율³⁸⁾이 적용됨

- 단, 배당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가 배당금 수령일로부터 과거 5년간 해당 폐쇄회사에서 활발히 경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사실이 있어야 함

- 한도액은 세법에 규정된 소득기준금액(income base amount)의 2.5배로 산정됨
- 2011년 한도액은 2011년 소득기준금액인 52,100크로나의 2.5배인 130,250크로나(약 19,600달러)임
- 이번 2012 예산안 발표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한도액이 소득기준금액의 2.75배로 인상됨
- 더불어 배당금 중 소득기준금액의 90배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됨

37) 일반적인 자본이득 세율은 30%이나, 폐쇄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총배당금 수령액의 2/3만 과세되므로,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20%임

38) 스웨덴의 2011년 기준 근로소득 세율은 다음과 같음

소득 구간 (단위: 크로나)	세율
383,000크로나 이하	0%
383,000크로나 초과 548,300크로나 이하	20%
548,300크로나 초과	25%

- 일정 자격을 갖춘 비영리 조직 또는 비영리 활동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25%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도입됨
 - 예산안 발표 전 스웨덴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기부문화 장려를 위해 기부금 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근로소득자 복리후생비 중 차량보조비의 과세표준 산정시 일정 요건이 충족된 친환경 차량에 적용되는 세제혜택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됨
 - 근로소득자의 소득 산정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차량보조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법에 규정된 계산방법³⁹⁾에 따라 과세표준이 산정됨
 - 전기 또는 LPG 이외의 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경감해 주는 혜택이 적용되고 있음
 -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11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이 세제혜택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됨
- 근로자의 통근비(commuting expenses) 소득공제 한도가 9,000크로나에서 10,000크로나로 인상됨
- 주택 전대 시장(sub-letting market) 활성화를 위해 자가 주택을 전대(sub-let)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8,000크로나에서 21,000크로나로 인상됨

3) 부가가치세 및 기타 소비세 분야

- 요식업(restaurant and catering services)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 현행 25%에서 12%로 인하됨
 - 2012년 1월 1일부터 요식업(주점 제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25%의 일반

39) 차량보조비의 과세표준은 다음 ①~④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합계임. 단, ④는 차량 출고가격(catalogue price)이 기준금액의 7.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됨.

① 기준금액(2011년 기준 42,800크로나)의 31.7%
 ② 차량 출고가격 × (전년도 11월 말 기준 정부 차입이자율 × 75%)
 ③ 차량 출고가격 × 9%
 ④ [차량 출고가격 - (기준금액 × 7.5)] × 20%

세율이 아닌 12%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고용시장 확대와 더불어 현재 1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식료품 및 호텔 서비스업(food and hotel services)과 세율을 일치시킴으로써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임

- 흡연 억제를 위해 담배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은 8% 인상됨

8. 스페인

가. 스페인 개정세법 발표

[조세동향 11-18]

- 스페인 정부는 2011년 8월 19일에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사항이 포함된 개정세법(Royal Decree Law 9/2011)을 승인함
 -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한 이번 개정세법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변경,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개정세법은 대부분 2013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규정이 대부분이며, 2011년 8월 21일부터 적용됨

1)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2011년, 2012년 및 2013년에 한해 법인세 중간예납(advance payments 또는 estimated payments)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21%에서 24%, 27%로 인상됨
 - 납세자는 연 3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함
 - 중간예납기한은 매년 4월 20일, 10월 20일 및 12월 20일임

-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임
- 따라서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납세자는 4월 20일, 10월 20일, 12월 20일까지 중간예납을 하고, 다음 해 7월 25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중간예납세액은 두 가지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산정 가능하며, 납세자는 두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방법 1) 가장 최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액 $\times$ 18%⁴⁰⁾
- (방법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중간예납 시점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발생한 과세소득 $\times$ 21%(이를 ‘중간예납세율’이라 함)⁴¹⁾
- 단, 사업연도 직전 12개월 매출합계액이 6,010,121.04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방법 2만 적용할 수 있음
-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방법 2의 중간예납세율이 납세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24% 또는 27%로 인상됨
- 매출액이 20백만유로 이상, 60백만유로 미만인 납세자: 24%
- 매출액이 60백만유로 이상인 납세자: 27%
- 단, 2011년 중 이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4월 중간예납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세율인 21%가 적용됨

□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현행 15년에서 18년으로 연장됨

- 납세자는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향후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개정 전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15년 이내에 공제가 가능했으나, 세법 개정에 따라 모든 법인에 대해 공제기한이 18년으로 연장됨

□ 2011년, 2012년 및 2013년에 한해 납세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한

40)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납세자가 방법 1을 적용하여 2010년 4월 20일에 중간예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최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2008 사업연도(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2010년 7월 25일임) 법인세 납부액의 18%가 중간예납세액임

41)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납세자가 방법 2를 적용하여 2010년 4월 20일에 중간예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소득의 21%가 중간예납세액임

도가 신설됨

- 개정 전 법인세법상 납세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기한 내 발생한 과세표준 전액과 상계 가능함
-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들에 한해 과세표준의 일부만을 이월결손금과 상계 가능하도록 하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됨
 - 매출액⁴²⁾이 20백만유로 이상, 60백만유로 미만인 납세자: 과세표준의 75%까지만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매출액이 60백만유로 이상인 납세자: 과세표준의 50%까지만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2011년, 2012년 및 2013년에 한해 영업권(financial goodwill)의 공제한도가 연 5%에서 1%로 축소됨

2)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es)

- 2011년에 한해, 신축주택 취득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 현행 8%에서 4%로 인하됨
 -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은 현재 18%인 일반세율(standard rate), 8%인 경감세율(reduced rate) 및 4%인 초경감세율(super reduced rate)로 구분됨
 - 개정 전, 신축주택의 취득에 대해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11년에 한해 4%의 초경감세율이 적용됨

42) 사업연도 직전 12개월 매출합계액을 의미함

9. 영국

가. 영국의 부가가치세 사업자 자진 등록 프로그램

[조세동향 11-15]

-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는 미등록 사업자들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자진 등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수주 내로 4만여 미등록 사업자들에게 자진 등록 프로그램에 대한 메일을 발송할 예정임
- 영국의 부가가치세법상 직전 12개월간 매출 합계액이 면세점인 73,000파운드를 초과하거나 30일 이내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등록(registration)해야 함⁴³⁾
 - 이전에 면세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기업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을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형태로 인수한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음
- 중소기업 사업자 중에서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가 다수 존재함
- 영국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으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가 9월 3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경감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함
 -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부과함
 - 현 부가가치세법상 지연 등록(late registration)에 따른 가산세는 아래의 표와 같음

43) 사업자 등록의 기준금액은 우리나라와 달리 물가연동을 하기 때문에 매회계연도마다 변경되고 있음

- 지연 등록시 지연납부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라 다른 가산세도 부담하게 되므로, 실제 부담하는 가산세율은 10%를 상회함

〈표 II-1〉 영국의 부가가치세 사업자 지연 등록 가산세율

(단위: %)

사업자 등록 의무 발생시점으로부터 경과한 기간	가산세율
9개월 미만	5
9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0
18개월 초과	15

주: 1. 가산세율은 납부세액에 대한 비율임

2. 최소 가산세 금액은 £50임

자료: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 사업자가 등록 의무를 알고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지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최고 납부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진 등록 프로그램 종료 이후 미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될 예정임

10. 이탈리아

가. 이탈리아의 긴축패키지 도입

[조세동향 11-20]

- 이탈리아 의회는 2011년 9월 14일에 로빈세의 적용대상 확대 및 세율인상,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긴축패키지(law decree 138/2011)를 승인하였음
 - 긴축패키지는 세수확대, 재정지출 감축 등을 통하여 543억유로의 재정적자에 대한 감축을 목표로 함
 - 긴축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인세 관련

- 석유·가스·전기에너지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부담하는 조세(소위, 로빈세)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세율이 인상됨
 - 로빈세(Robin tax)는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유가급등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금임
 - 로빈세(Robin tax)는 석유 등 에너지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매출액요건과 산업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이들 법인의 법인세에 추가하여 징수함
 - 긴축패키지에 따라 인상된 세율(6.5%에서 10.5%로 인상)은 2011년, 2012년 및 2013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됨
- 긴축패키지에 따르면, 로빈세가 적용되는 산업이 확대되고 금액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로빈세의 과세대상이 확대됨
 - 과세대상 산업의 확대 : 기존의 과세대상 법인에 석유, 전기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포함시킴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 합성물의 연구·생산업, 석유정제업, 석유와 가스 생산·판매업 및 전력생산·판매업을 영위하여야 함

- 다만, 석유·가스의 운송, 저장과 전력의 전송 등에 관련된 법인은 제외됨
- 금액기준의 인하 : 직전 과세연도의 총매출액이 1천만유로를 초과하면서 과세소득이 1백만유로를 초과한 법인이 과세대상이 됨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전 과세연도의 총매출액이 2.5천만유로를 초과하여야 함
- 세율은 한시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6.5%에서 10.5%로 인상됨
- 따라서 최종적으로 부담할 법인세율은 한시적으로 $27.5\% + 10.5\% = 38\%$ 임

〈표 II-2〉 로빈세 개정내용

구분		현행 제도	긴축패키지
과세 대상	매출액	직전 과세연도의 총매출액이 2.5천만 유로를 초과	총매출기준이 1천만유로를 초과하면서 과세소득이 1백만유로를 초과
	산업	석유와 가스 합성물의 연구·생산업, 석유정제업, 석유와 가스 생산·판매업 및 전력생산·판매업을 영위하여야 함 석유·가스의 운송, 저장과 전력의 전송 등에 관련된 법인은 제외됨	현행 제도에 전기전송업, 가스와 전기의 운송업, 재생에너지 산업이 추가됨
세율		6.5%	10.5%('11~'13년 한시 적용)

2) 소득세 관련

- 납세자 유형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가중시킴
 - 국회의원의 경우, 9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10%의 추가세율이 적용되고, 15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추가세율이 적용됨
 - 공공부문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9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5%의 추가세율이 적용되고, 15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10%의 추가세율이 적용됨
 - 기타 유형의 납세자의 경우 30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3%의 추가세율이 적용됨
 - 추과세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2013년 이후에는 원래의 세율로 환원될 예정임

- 단,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추가세율의 경우 2011년 11월부터 시행함

〈표 II-3〉 현행 소득세 과세구간

과세구간 (유로)	세율 (%)
up to 15,000	23
15,001 - 28,000	27
28,001 - 55,000	38
55,001 - 75,000	41
over 75,000	43

자료 : <http://online.ibfd.org/kbase/>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의 단일세율로 인상됨
 - 내국법인이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12.5%에서 20%로 인상됨
 - 인상된 세율은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 조세조약이 더 낮은 세율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채권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12.5%에서 20%로 인상됨
 - 다만, 이에 해당되는 채권에는 이탈리아, EU 및 이탈리아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 제외됨
 - 인상된 세율은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3) 부가가치세 관련

- 부가가치세의 기본 세율이 현행 20%에서 21%로 인상됨
 - 인상된 세율은 2011년 9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11. 포르투갈

가. 포르투갈 2012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11-23]

- 포르투갈 정부는 ‘2012 예산안(Law Proposal 90/2011)’을 2011년 10월 17일에 의회에 제출함
 - 이번 2012 예산안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각종 공제 축소 및 세율인상, 간접세 세율 인상, 가산세 규정 강화 등 주로 세수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 사항이 포함됨

1) 법인세 분야

- 12,500유로 이하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던 12.5%의 법인세 경감세율이 폐지됨에 따라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 25%의 일반세율이 적용됨
- State surcharge의 과세구간이 변경되고 세율이 인상됨
 - 현행 규정상 포르투갈 법인은 2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별도로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state surcharge가 부과됨
 - 2012 예산안에 따르면 state surcharge의 과세구간 및 세율이 변경되어 1.5백만 ~ 10백만유로의 소득에 대해서는 3%의 세율이 적용되고 10백만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방침임
 - 이는 2012 및 2013 회계연도에 한해 적용될 예정임
-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당해 회계연도 과세표준의 100%에서 75%로 인하된 반면,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기한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 현행 규정상 포르투갈 법인은 결손금 발생시 이후 회계연도 과세표준의 100%를 한도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결손금 발생연도로부터 4년까지 결손금의 이월공

제가 허용됨

-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현행 100%였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75%로 인하되고,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로부터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기한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 더불어 3개년도 연속 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법인에 요구됐던 재무제표 감사요건이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폐지됨

□ 납세자가 보다 유리한 조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목적으로 비거주자에게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급 시, 당해 지급액의 손금 산입이 금지됨

- 비거주자에 대한 자금지급 행위가 유리한 조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목적임을 납세자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금지됨
 - 납세자가 당해 지급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임
 - 단, 납세자와 유리한 조세제도를 적용받는 자 또는 납세자와 법무대리인, 수탁자, 중개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음
- 또한 유리한 조세제도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포르투갈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21.5%에서 30%로 인상됨

□ 피지배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이하 CFC) 제도의 적용범위가 변경됨

- CFC 제도란 저세율 국가에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익을 장기 유보하는 방식으로 거주지국의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의제하는 제도임
- 현행 규정에 따르면 i) 외국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내 지분참여자(resident participator) 또는 ii) 국내 지분참여자들이 자본을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자본을 10% 이상 보유하는 국내 지분참여자에 대해 CFC 제도가 적용됨

- 이번 예산안을 통해 내국법인이 법정대리인, 수탁자 또는 중개인을 통해 간접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도 CFC 제도가 적용됨
- 반면, CFC 적용대상 외국법인이 유럽연합(EU) 또는 유럽경제지역(EEA)의 회원국에 설립되어 있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CFC 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됨
 - 외국법인이 합리적 사유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고
 - 외국법인이 농업, 상업, 공업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개인소득세 분야

-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 연대세(solidarity tax)가 부과되고, 일부 자본이득 및 임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됨
 - 연 과세소득이 153,300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 2.5%의 연대세가 새롭게 부과될 예정임
 - 주식 및 증권의 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적용되는 세율이 20%에서 21.5%로 인상됨
 - 포르투갈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포르투갈 내에서 실현한 임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15%에서 16.5%로 인상됨
 - 일반 개인소득세율 및 과세구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됨⁴⁴⁾
- 특정 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 이월공제 기한이 연장됨
 -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category B(사업소득), category F(임대소득) 및 category G(자본소득)로부터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기한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한도가 축소, 변경 또는 신설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점심식대비 공제(lunch allowance)의 공제한도가 하루당 6.41유로에서 5.55유로로 인하됨

44) 포르투갈의 개인소득세율은 “〈표 II-4〉 포르투갈의 과세구간 별 세율 및 세액공제 한도”를 참고

- 건강보험료 프리미엄(health insurance premium)의 소득공제가 30%에서 10%로 축소됨
- 건강유지비(health expense)의 세액공제가 발생비용의 30%에서 10%로 축소되며, 금액 한도가 신설되어 총공제금액이 838.44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
- 주택자금대출로 인한 이자비용(housing loans expenses)의 세액공제가 발생비용의 30%에서 15%로 축소됨
 - 현행 규정상 공제금액 한도인 591유로는 동일하게 유지됨
- 위자료의 세액공제는 지급액의 20%로 현행 규정이 유지되나, 공제 금액한도가 총 1,048.05유로에서 (수령자 1인당) 월 419.22유로로 변경됨
-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 세액공제는 2017년까지 점차 축소되어 2018년도 부터 폐지될 예정임
- 개인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5%를 한도로 개인 소득세, 부동산세(real estate tax) 및 유통세(circulation tax)상 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새롭게 부여될 예정임
 - 이 규정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며, 세부 내용은 향후 발표될 예정임

〈표 II-4〉 포르투갈의 과세구간별 세율 및 세액공제 한도

과세구간	과세표준(유로)	세율(%)	세액공제 한도(유로)	
			2011년(현행)	2012년(예산안)
1	~ 4,898	11.5%	한도 없음	한도 없음
2	4,899 ~ 7,410	14%	"	"
3	7,411 ~ 18,375	24.5%	"	1,250
4	18,376 ~ 42,259	35.5%	"	1,200
5	42,260 ~ 61,244	38%	"	1,150
6	61,245 ~ 66,045	41.5%	"	1,100
7	66,046 ~ 153,300	43.5%	Min[과세소득 × 1.666%, 1,100유로]	0
8	153,301 ~	46.5%	1,100	0

자료: "State Budget 2012 Portugal", Price WaterhouseCoopers, October 2011

□ 각 과세구간별 세액공제 한도가 인하됨

- 현행 규정상 각 과세구간별로 설정되어 있는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각종 세액공제 (건강유지비, 교육훈련비, 보육비, 위자료 세액공제 등)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각 과세구간별 세액공제 한도가 아래 표와 같이 축소됨
 - 일정 한도 이내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되던 과세구간 7 및 8에 대해 세액공제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전액 허용되던 과세구간 3~6에 대해 1,100 ~ 1,250유로의 세액공제 한도가 설정됨

3) 간접세 분야

□ 생수, 유제품 음료 및 디저트, 탄산음료 등 현재 부가가치세 경감세율(6%) 적용대상 인 일부 재화 및 용역이 중간세율(13%) 또는 표준세율(23%) 적용대상으로 전환됨

□ 전기 소비에 대한 소비세(excise duties)가 신설됨

- 최종 소비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생산자(producer), 매매업자(trader), 자가생산자(self-producer) 및 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 소비량 MWh당 0~1유로의 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임

□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주체(entities)에 적용되는 부동산세(real estate tax, RET) 및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RETT)의 세율이 각각 인상됨

- 포르투갈은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 대해 부동산 평가액을 바탕으로 매년 RET가 부과되며, 양도시에는 RETT가 부과됨
-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주체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 RET 및 RETT가 부과됨
- 이번 2012 예산안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주체에 대한 RET 세율은 5%에서 7.5%로 인상되었으며, RETT 세율은 8%에서 10%로 인상됨

- 도시지역 부동산에 대한 RET의 최저 및 최고세율이 각각 0.1%씩 인상됨
 - 신 부동산법(new real estate code)에 따라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RET 세율은 현행 0.2~0.4%에서 0.3~0.5%로 인상되었으며
 - 아직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RET 세율은 0.4~0.7%에서 0.5~0.8%로 인상됨

4) 기타

- 가산세 한도가 인상되고 새로운 가산세 규정이 신설되는 등 가산세 규정이 보다 엄격해짐
 - 고의적 과실 및 부주의에 의한 과실에 대한 가산세 한도액이 각각 인상됨
 - 고의적 과실에 대한 가산세 한도액은 현행 110,000유로에서 165,000유로로 인상되었으며
 - 부주의에 의한 과실에 대한 가산세 한도액은 현행 30,000유로에서 45,000유로로 인상됨
 - 이전가격보고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및 CFC 제도에 따른 요구자료의 지연 제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됨

12. 프랑스

가. 프랑스의 구글세 도입 계획 철회

[조세동향 11-14]

- 프랑스 집권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필립 마리니 상원의원은 2011년 6월 22일 ‘구글세’로 불려졌던 온라인 광고에 관한 과세방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 구글세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구매자가 지급하는 온라인 광고비용에 대해 온라인 광

고회사에 1%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임

- 구글세는 2010년 12월에 승인된 2011년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

□ 구글세에는 외국자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광고회사는 조세회피가 가능하여 실제 세부담은 중소형 광고회사에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하였음

- 외국에 자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광고회사는 프랑스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의 구매장소를 외국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피할 수 있음
- 반면, 구글세는 전통적 미디어에서 광고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소형 광고회사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음
- 프랑스 국가디지털위원회는 지난 5월 구글세가 개인, 기업, 정부의 인터넷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G-8 회의의 결정과 부합하지 않다고 경고함

나. 프랑스 의회의 수정예산안 승인

[조세동향 11-17]

□ 프랑스 의회는 2011년 7월 6일에 2011년 수정예산안(modified finance bill 2011)을 승인하였음

- 수정예산안은 2011년 5월 11일에 정부에 의해서 승인된 사항임
- 수정예산안의 주요 사항은 부유세의 과세최저한 인상,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출국세 신설, 상속증여세율 인상 등임

1) 부유세(wealth tax)

□ 부유세의 과세최저한(threshold)을 현행 800,000유로에서 1,300,000유로로 인상하고, 과세구간(brackets)도 2012년에 개정할 예정

- 부유세는 국내·국외에 소재한 가계의 순재산(자산-부채)의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임

- 과세대상 재산은 부동산(토지, 주택 등)과 동산(자동차, 금융재산, 펀드 등)으로 구성됨
- 과세표준 = 해당자산의 시장가치 - 부채가치
- 개정 세율체계 및 현행 세율체계는 아래의 <표 5>와 같음
- 수정예산안에 따르면 현행 7개 세율구간(0세율 구간 포함)은 3개 세율구간(0세율 구간 포함)으로 단순화됨
- 특히 과세표준이 1,300,000유로 이하인 경우 부유세 세율이 0%이고, 3,000,000유로 이상이면 0.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1월 1일의 시장가치로 평가되며 부유세는 6월 15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과세표준이 1,300,000유로 이하인 경우 부유세 세율 0%를 2011년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표 II-5> 부유세의 현행 및 개정 세율체계 비교

현행 세율체계		개정 세율체계	
과세대상 (EUR)	세율 (%)	과세대상 (EUR)	세율 (%)
up to 800,000	0	up to 1,300,000	0
800,001 ~ 1,310,000	0.55	1,300,001 ~ 3,000,000	0.25
1,310,001 ~ 2,570,000	0.75	over 3,000,000	0.5
2,570,001 ~ 4,040,000	1.00		
4,040,001 ~ 7,710,000	1.30		
7,710,001 ~ 16,790,000	1.65		
over 16,790,000	1.80		

- 부유세 부담의 최고한도 규정은 2012년에 폐지됨
 - 부유세 부담 최고한도 : 부유세는 직전연도 소득의 85%를 초과할 수 없음
- 주식의 집합투자계약(collective undertaking)에 대한 부유세와 상속세 면제를 위한 6년 보유요건이 완화됨
 - 집합투자계약을 통해 주식을 6년 동안 보유할 경우, 주식에 대한 부유세와 상속증여세를 면제함
 - 주식에 대한 부유세는 전액 면제하고(Art. 885 I CGI),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50%를 면제함(Arts. 789 A and 789 B CGI)

- 기존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유세와 상속세 면제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 첫째, 신규와 기존주주들이 집합투자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유함
 - 둘째, 상장주식의 경우 최소 20%, 비상장주식의 경우 최소 34%를 투자하여야 함
 - 셋째, 신규주주도 위의 지분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계약을 유지하여야 함
 - 넷째, 집합투자계약이 2년간 연장됨

2) 상속·증여세

- 상속·증여세 세율의 최고 2개 구간에서 5%p씩 인상됨
 - 과세표준이 902,838 ~ 1,805,667유로에 있는 경우, 현행 35%에서 40%의 세율을 적용함
 - 과세표준이 1,805,667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현행 40%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함

〈표 II-6〉 상속증여세율 체계

현행 과세구간 (EUR)		세율 (%)	개정 과세구간 (EUR)		세율 (%)
up to	8,072	5	up to	8,072	5
8,073	~ 12,109	10	8,073	~ 12,109	10
12,110	~ 15,932	15	12,110	~ 15,932	15
15,933	~ 552,324	20	15,933	~ 552,324	20
552,325	~ 902,838	30	552,325	~ 902,838	30
902,839	~ 1,805,677	35	902,839	~ 1,805,677	40
over	1,805,677	40	over	1,805,677	45

- 증여자의 연령에 기초한 공제제도가 폐지됨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증여자가 증여 시점에 65세 이하인 경우 법정연령의 직계비속을 위하거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4촌 조카를 위한 현금 증여금액은 31,395유로까지 소득공제함

3) 출국세

- 미실현자본이득에 부과되는 새로운 출국세가 외국으로 이주하는 프랑스의 거주자에 대하여 2011년 3월 3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출국세는 외국으로 이주하는 프랑스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되며 과세대상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이득임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이득은 이주하기 전 10년 중 최소 6년간 프랑스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와 과세이연되는 주식에 해당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납세자가 외국으로 이주하기 전 10년 중 최소 6년간 프랑스의 거주자인 경우,
 - ①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②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의 평가액이 1,300,000유로 이상인 거주자의 보유지분과 관련한 자본이득 및 ③ 언아웃(earn-out)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
 - 언아웃(earn-out)이란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 이후 이익이 발생할 때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함
 - 둘째, 과세가 이연되는 특정 주식교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임
 - 특정 주식교환은 합병, 분할, 분리설립 등의 사유로 주식을 교환하는 것임
- 출국세율은 양도하는 시점에 유효한 자본이득세율에 사회부담금(social contribution)을 가산함
 - 자본이득세율 : 19%(사회부담금을 포함할 경우, 31.3%)
- 다른 EU 회원국이나 프랑스와 과세회피방지를 위한 행정협력협정을 체결한 EEA 회원국으로 이주하는 프랑스의 거주에 대해서는 자동과세이연이 허용되기도 함
 -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특별히 요청할 경우 과세이연이 허가될 수도 있음
- 납세자가 이주한 8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를 한 경우, 또는 납세자가 8년 안에 프랑스로 돌아온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함

4) 기타

- 온라인 광고서비스의 구매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소위, 구글세)의 도입을 취소함
- 직접세 부담의 최고한도(tax shield) 규정이 폐지됨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접세의 총부담액이 납세자의 직전연도 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아니 됨
 - 직접세에는 소득세, 자산세, 부유세 등이 포함됨

다. 프랑스의 2011년 추가경정예산 승인

[조세동향 11-21]

- 프랑스 의회는 2011년 9월 8일에 재정적자의 감축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정이 중심인 2011년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을 승인함

1) 법인세 관련

-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의 한도규정을 도입함
 -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과세소득 1백만유로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1백만유로로 하고, 과세소득 1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음
 - 연결자회사의 경우, 연결법인세를 계산하기 전에 이월결손금 한도를 계산함
 - 한도를 초과한 이월결손금은 이월되며, 이월되는 기간에 제한은 없음
 - 개정 전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없음
 - 이 규정은 추경예산이 효력을 얻은 날(즉, 관보(official gazette)에 기재되는 날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실행됨
- 내국법인의 자회사나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전세계 소득통합방식(worldwide consolidated income basis system)을 폐지함

- 전세계소득통합방식에 따르면, 프랑스 내국법인은 프랑스와 외국의 자회사나 지점에
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나 외국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 전세계소득통합방식은 2011년 9월 6일 이후부터 폐지됨

□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0%를 과세소득에 가산함

- 개정 전에는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5%만 과세소득에 가산함
- 프랑스의 경우 다른 국가와는 달리 지분참여소득공제(participation exemption)제도를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에도 적용하고 있음(Art. 219 I-a quinquies CGI)
- 지분참여소득공제제도: 이미 과세된 유보금을 원천으로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 개정된 가산율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2) 소득세 관련

□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공제제도의 혜택을 축소시킴

- 기존에는 6년 이상 보유시 매년 10%씩 공제율을 상향시켜 15년 이후에는 100% 공
제를 허용하였지만,
- 개정 후에는 6~15년까지 매년 2%씩, 16~24년까지 매년 4%씩, 24년 이후 매년 8%씩
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30년 이후에 100% 공제가 가능토록 함
- 개정된 공제율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됨

〈표 II-7〉 장기보유공제제도 개정내역

보유기간	장기보유공제율	
	개정 전	개정 후
0 ~ 5년	없음	없음
6 ~ 15년	$(\text{보유연수} - 5) \times 10\%$	$(\text{보유연수} - 5) \times 2\%$
16 ~ 17년	100%	$20\% + (\text{보유연수} - 15) \times 2\%$
18 ~ 24년	100%	$24\% + (\text{보유연수} - 17) \times 4\%$
25 ~ 30년	100%	$52\% + (\text{보유연수} - 24) \times 8\%$

- 해외에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가 주로 프랑스에 소재한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그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이전한 이후 1개월 이내에 프랑스에서 공증서(notarized deed)를 작성하여야 함
 - 이 규정의 목적은 프랑스에 소재한 부동산에 주로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이전에 대한 자본이득세와 등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

3) 기타

- 1박 숙박비가 200유로 이상인 숙박시설에 대하여 호텔 숙박세를 도입함
 - 과세대상 숙박시설은 5.5%의 VAT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시설임
 - 호텔 숙박세는 1박 숙박비가 200유로 이상인 숙박시설에 대하여 숙박료의 2%를 징수함
 - 호텔 숙박세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

라. 프랑스 하원의 부가세(surtax) 승인

[조세동향 11-23]

- 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은 2011년 10월 19일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하여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부가세(surtax)(안)의 부과를 승인하였음
 - 부가세(안)는 현재 프랑스 상원(Senate)에 상정되었으며, 상원은 2011년 12월 20일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부가세는 2011년 과세연도(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한 시적으로 적용됨
- 부가세는 소득세의 최고구간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의 구간에 대해서 3%나 4%의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임
 - 부가세율은 250,000유로부터 500,000유로 미만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3%가 부과되고, 500,000유로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4%를 부과함

〈표 II-8〉 2011년 과세연도의 소득세율 구간

(단위 : 유로, %)

과세소득 구간			소득세율	부가세율	총세율
0	~	5,963	0	-	0
5,964	~	11,896	5.5	-	5.5
11,897	~	26,420	14	-	14
26,421	~	70,830	30	-	30
70,831	~	250,000	41	-	41
250,001	~	500,000	41	3	44
500,000	초과		41	4	45

III

아시아

1. 대만

가. 대만의 과소자본세제 개정

[조세동향 11-14]

- 대만의 재경부는 2011년 6월 21일에 관계기업의 범위에 대한 정의 등을 포함하는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지침서를 공포함
- 과소자본세제는 영리기업(profit seeking enterprise, PSE)의 관계기업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중 정해진 부채/자본비율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세무목적상 공제하지 않는 제도임
 -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이자비용은 이월공제로 사용되거나 배당으로 재편되지 못함
- 지침서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인데, 영리기업에는 자회사나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을 포함함
 - 부채/자본비율은 일반적으로는 3:1로 이 비율은 기업의 사업내용이나 산업에 따라 달라지지 않지만, 금융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배제함
 - 금융업은 은행, 금융지주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포함됨
 - 관계기업에 대한 정의는 대만 이전가격지침을 따르도록 함
 - 이전가격지침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18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작·간접비용, 실질적 경영권이나 통제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총부채(covered debt)는 관계기업의 부채, 관계기업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준비된 비

관계기업의 부채, 관계기업으로부터 지출한 자금에 의한 기타부채도 포함되지만, 다음에서 열거하는 경우에는 부채에서 제외됨

- 영리기업의 수익, 이자비용이나 과세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 이자가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구입과 관련되어 자본화된 경우
- 이자가 토지의 구입과 관련되어 자본화되거나 매매 목적 토지의 구입과 관련하여 이연된 비용으로 분류된 경우
- 부채 중 재경부가 승인한 부채인 경우
- 과세당국이 이자비용에 대한 이전가격조정을 했다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부채/자본비율은 재조정되어야 함
- 공제되지 않는 이자비용은 관계기업의 이자비용 $\times$ [1-(3/(부채/지분))]의 산식으로 계산됨

2. 뉴질랜드

가. 뉴질랜드의 세법 개정

[조세동향 11-18]

□ 뉴질랜드의 2011년 세법안(Taxation Bill 2011, Tax Administration and Remedial Matters)이 2011년 8월 17일 의회를 통과하고 2011년 8월 29일 왕실의 허가를 받아 최종 승인됨

- 개정 법안은 세무신고비용을 축소하고 세법의 복잡성 및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춤

1) 증여세(gift duty)의 폐지

□ 개정법에 의하면 2011년 10월 1일 이후 이전하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gift duty)를 폐지함

- 1992년 상속세(estate duty)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보조하는 자산으로의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존속시켜 왔음

-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는 2010년 6월에 증여세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후 정부부처와 다양한 협력을 통한 대체적인 세수 보호조치를 만들어 왔음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신탁자의 세율을 33%로 일치시켰고, 이에 따라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동기가 상당히 감소함

□ 증여세(gift duty)의 폐지에 따라 관련 세무행정에 대한 규정도 폐지함

- 2011년 10월 1일 이후에 행해지는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계산서(gift statements)를 신고할 필요가 없음

2) PIE 규정 변화

□ 개정법에 의하면 포트폴리오 투자체(portfolio investment entities, PIEs)에 대한 세법 규정에 외국투자 영세율 PIEs와 외국투자 변동률 PIEs가 도입됨

- 외국투자 영세율 PIEs는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 가능하고, 외국투자 변동률 PIEs는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함
- 외국투자 PIEs 규정은 PIEs에 투자하는 비거주자의 세무처리와 직접 투자하는 비거주자의 세무처리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 개정법은 선택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

□ 개정 전 비거주자는 PIE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이 다르더라도 28%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었음

- 거주자에 대한 PIE 규정은 PIE에 투자한 거주자와 PIE의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한 거주자의 조세상 효과가 동일하도록 세법이 설계되었는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세법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와 동일하게 세법을 설계하지 못함

□ 개정법에 따르면 외국투자 영세율 PIEs는 역외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함

- 뉴질랜드 원천소득 중 몇몇 소득만 이 규정이 적용됨
- PIE 소득 중 특정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0'의 세율로 과세됨

□ 개정법에 따르면 외국투자 변동률 PIEs는 뉴질랜드와 역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할 수 있음

- 외국투자 변동률 PIEs는 소득의 종류와 원천에 따라서 비거주자에게 속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양한 다른 세율을 적용한 것임

3) 세무공무원의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

□ 개정 전의 세무공무원의 비밀보장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 개정 전 조세공무원의 비밀에 관한 규정은 1994년 조세행정부법(Tax Administration Act 1994) 81조와 1974년 뉴질랜드 연금법(ACC Acts and the the New Zealand Superannuation Act 1974)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 이 법들에 의하면 행정부의 공무원은 세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알게 된 지식을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다른 행정부와 의견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개정 법안에 따르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세법시스템의 진실성(integrity), 자발적 신고 촉진의 중요성, 납세자의 이용 가능한 정보, 관련된 납세자의 민감도(sensitivity), 해당 정보가 대중적인 공유가 되고 있는지 등임
- 공무원은 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4) 기타 규정의 변화

- 연결(pooling)을 하는 경우에 조세를 구매할 수 있는 시기를 연장함
 - 개정 전 규정에 의하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조세구매(tax purchases)가 가능했지만 개정 규정에 의하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75일로 연장함
 - 그러나 동일 그룹의 회사나 납세자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음
- 공인된 주식교환 외에 발생하는 지분거래에서 소유지분의 계속성에 대한 경영자의 노하우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장내와 장외시장 거래에서 경영자 노하우테스트 적용을 배제함

3.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의 이슬람금융에 대한 세법 개정⁴⁵⁾

[조세동향 11-19]

- 싱가포르 금융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2011년 6월 8일에 특정 이슬람금융에 대한 세법규칙⁴⁶⁾을 개정함
 - 개정의 대상이 되는 특정 이슬람금융거래는 무라바하(Murabaha)⁴⁷⁾, 무샤라카(Musharaka)⁴⁸⁾, 이스티스나(Istisna)⁴⁹⁾, 와카라(Wakalah)⁵⁰⁾임

45) www.kpmg.com/SG/en/IssuesAndInsights/ArticlesPublications/Documents/Tax_TaxAlert2011_17.pdf

46) Circular No. FDD 05/2011

47) 무라바하(Murabaha)는 이슬람금융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기계를 사전에 구입한 뒤 일정한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임

48) 무샤라카(Musharaka)는 채권자가 자본가로서 사업자와 공동출자를 하고 공동경영을 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을 사전계약에 따라 배분하는 거래로 손실은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지만 이익은 사전에 약속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거래임

- 싱가포르는 2005년 예산에 이슬람금융에 대한 조세상의 혜택을 도입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조세혜택을 증가시켜 왔음
- 2006년 세법규칙(Circular FDD 11/2006)을 통해 무라바하(Murabaha), 이자라(Ijara), 무다라바(Mudaraba), 이자르 와 르그티나(Ijara Wa Lgtina)의 개념을 설명함

- 개정된 세법규칙은 싱가포르가 특정 이슬람금융거래에 대한 조세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2006년에 규정된 무라바하(Murabaha)의 개념을 더 정교하게 함
 - 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이자의 개념을 확대함
 - 관습상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보장이윤(mark-up) 등으로 이자와 경제적 본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자에 포함되도록 함
 -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수익이나 보장이윤(mark-up)을 이자에 포함하도록 함
 - 이슬람금융에서 발생하는 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는 면제됨
 - 본래 금융거래에서는 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상품공급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가 발생함
 - 예외적으로 상품공급을 수반하는 경우라도 특정 이슬람금융거래에서 상품공급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를 면제함
 - 인지세(Stamp duty)에 대한 적용을 명확하게 함
 -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이전에 대한 인지세는 이슬람금융에 대해서도 부과됨
 - 그러나 인지세법 제74조에 따르면 특정한 이슬람금융의 종류에 따라 전액 면제되기도 하고 500싱가포르달러 초과액이 면제되기도 함

49) 이스티스나(Istisna)는 주문생산에 따른 계약방식으로 채무자가 요청한 사양대로 채권자가 상품을 만들어서 매도하는 거래임. 대금지불방식이 유연(예를 들어, 계약 당시 완불, 할부, 기성고에 따른 지불, 인도시 지불 등이 모두 가능함)한 특징이 있음

50) 와카라(Wakalah)는 채권자가 은행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은행이 투자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한 후 미리 결정된 수수료를 받는 거래로 이익과 손실은 전부 채권자에게 귀속되고 은행에 지불된 수수료는 비용으로 공제됨

4. 일본

가. 일본의 세제개정 조치

[조세동향 11-14]

- 일본은 2011년 6월 22일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 및 고용상태에 대응하여 세제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등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하고 공포·시행함
 - 이 법률은 2011년 6월 30일 공포되고 시행됨
 - 동 법률은 2011년 세제개정법안과는 별도로 세제정책을 확충하고 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별조치법을 연장하기 위한 법률임
 - 법인세율 5% 인하 등이 포함된 2011년 세제개정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임
- 이 법률에는 고용 및 환경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의 창설, 기부세제의 확충, 금융·증권세제의 개정, 조세특별조치의 연장 등이 포함됨

1) 고용 및 환경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의 창설

- 고용촉진세제는 근로자의 추가고용을 한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
 - 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시기가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여야 함
 - 세액공제 금액은 증가되는 근로자 표준인원당 200,000엔으로 계산됨
 - 공제한도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중소기업은 20%)임
- 환경관련 투자촉진세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청색신고 외국법인이 특별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청색신고 외국법인이 2011년 6월 22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환경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기계 및 장비를 취득한다면 기계 및 장비 취득금액의 30%를 특별상각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법인세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한도로 하여 기계 및 장비 취득액에 대하여 7%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2) 외국법인의 일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

- SZIS(Special Zones for International Strategy)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적격법인은 특별상각 등의 세제혜택이나 각종 공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법인이 2011년 6월 22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SZIS에서 제공되는 비지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설치한 경우, 해당 법인은 그 취득 및 설치금액의 50%를 특별상각(건물에 대해서는 25%)하거나 그 취득 및 설치금액의 15%를 세액공제(건물에 대해서는 8%)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제한도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20%임
- 법인이 2011년 6월 22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SZIS에서 승인된 비지정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승인일 후 5년간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의 20%를 공제할 수 있음

3) 소비세관련 조치

-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면제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현재의 과세면제점 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인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개인사업자의 기준기간은 당해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임
 - 법인사업자의 기준기간은 당해 과세기간의 전전 사업연도임
-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전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과세매출액, 법인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 6개월에 대한 과세매출액이 1,000만엔 이상이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과세면제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매출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매입소비세 100%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현재 일본에서는 사업자의 과세매출 비율이 95% 이상이면 매입소비세를 100%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매출액이 5억엔 이상이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4) 과세특례조치의 연장

-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조치를 연장함
 - 개인의 상장주식에 대한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경감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2011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데, 이 규정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조치를 연장함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8%로 하는 조세특례조치를 2012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중소기업은 과세소득이 800백만엔 이하인 법인임

5) 기부세제의 개정

- 지정된 비영리조직에 대하여 적격기부를 한 개인은 2,000엔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40%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공제한도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25%임

6) 개정을 논의중인 주요 세제 조치

- 2011년 세제개정법안은 국회에서 현재 심의되고 있는데, 심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세 인하, 가속상각의 감소, 근로소득공제의 제한, 상속세의 공제한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법인세 관련한 개정 논의사항은 유효법인세율을 약 5%포인트 인하, 이월공제를 80%로 제한하고 이월공제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9년으로 연장, 초기의 가속상각을 감소,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를 증가시키는 것임
- 소득세 관련한 개정 논의사항은 근로소득공제의 제한, 성인 부양가족공제의 폐지,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자격부여 규정의 개정임
- 상속세 관련된 개정 논의사항은 상속세의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상속세율을 재설계하는 것임

나. 일본의 2012년 세법개정대강

[조세동향 11-25]

- 일본정부는 2011년 12월 10일에 세제개정안의 개요인 '2012년도 세제개정대강(大綱)'을 공표함⁵¹⁾
 - 일본의 세제개정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세제개정요망, 세제개정대강, 대강에 대한 각의(閣議)결정, 법률안에 대한 각의(閣議)결정, 국회 제출 및 승인의 과정을 거침⁵²⁾
 - 세제개정 과정은 세제조사회가 자문을 받아서 8월말에 '세제개정요망'을 작성함

51) 일본재무성에서 홈페이지(www.mof.go.jp)에 게재된 '평성24년 세제개정대강', '평성24년 세제개정대강의 개요' 및 KPMG일본의 홈페이지(www.kpmg.or.jp)에 게재된 '2012년도세제개정대강'의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임

52) 일본 세제개정의 과정은 2010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발간 조세동향 10-21 참조하기 바람

- ‘세제개정요망’에 대하여 각 부성(府省)에 10월말을 기한으로 수정을 구함
- 각부성(府省)에서 수정된 ‘세제개정요망’을 바탕으로 12월 하순 경에 차기연도 세제 개정대강(大綱)을 정리하고 동일자로 각의(閣議)결정을 함
- ‘세제개정대강’을 바탕으로 법률안을 만들고 차기연도 1월 하순에서 2월 초순에 법률안에 대한 각의(閣議)결정을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함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2010년 3월 하순경에 가결·성립됨
- 이후의 개정과정은 ‘2012년 세제개정대강(大綱)’을 바탕으로 2012년 세법 법률안을 작성하고 각의 결정 후 국회에 제출되어 가결되면 성립됨
- 개정되는 세법의 상세한 내용은 ‘세제개정대강’이 개정 법안으로 가결되는 과정에서 확정되고 변경될 수 있음

□ 2012년 세제개정의 기본방침은 ① 신성장 전략 실현을 위한 세제조치, ② 세제의 공정성 확보와 과세의 적정화를 위한 대응조치, ③ 주민자치의 확립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혁, ④ 2011년도 개정에서 남아 있던 사안에 대한 대응임

1) 국제조세

가) 과다 지급이자 세제의 창설

- 과다 지급이자 세제는 관련자 간에 소득금액에 비하여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세제임
 - 이 제도는 2013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행할 예정임
 - 다만, 관련자 순지급이자액이 1,000만엔 미만이거나 관련자 지급이자액이 총지급이자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법인의 관련자에 대한 순지급이자액이 조정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 조정소득금액은 당기의 소득금액에서 관련자 순이자지급액, 감가상각비, 수입배당 등 익금불산입액을 더하고 특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금액임

- 관련자는 해당 법인과 직·간접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자나 실질 지배·피지배 관계가 있는 자이며, 이들에게 채무보증을 받은 자를 포함함
- 관련자 순이자지급액은 관련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합계액에서 관련자 지급이자에 대응하는 수입이자를 차감한 금액임

□ 손금불산입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함

- 과거 7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손금불산입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함
- 따라서 공제부족액 즉, 지급이자액이 조정소득금액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차이 금액까지 이월된 손금불산입액을 공제 가능함

□ 또한 제도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

- 과소자본세제와 이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 제도 중 손금불산입액이 많은 제도 하나만 적용함
- 조세피난처 대응세제와 이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제도에 의한 손금불산입액을 조세피난처세제에 의한 합산소득에서 제외하여 조정하도록 함
- 적격합병이나 100%자회사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전부 분배하는 경우로 이월된 손금불산입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피합병회사나 모회사에서 승계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계획임

나) 조세피난처 대응세제

- 조세피난처 대응세제에 의하여 과세했던 유보소득과 이 소득이 배당될 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이중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간접특정과세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수입배당금을 과세하지 않음
- 조세피난처 대응세제에 따라 내국법인에 합산과세되는 외국계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자회사를 통해서 해당 내국법인에 배당될 때 다시 과세되어서는 안 됨
-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배당액에서 외국자회사에 대한 간접 특정 과세대상금액에 도달

할 때까지의 금액을 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간접특정과세대대상금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함
 - 3년 동안 외국자회사가 외국계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에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3년 동안 합산과세된 외국계회사의 소득금액에 내국법인의 외국계회사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보유비율의 판정시기를 ‘내국법인의 배당사업연도 종료시’에서 ‘내국법인의 배당사업연도 말에 가까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할 배당의 지급기준일이나 기준일에 상당한 날’로 개정하고자 함

다) 국외재산조서제도의 창설

- 국외재산에 대한 소득세 및 상속세 등의 적정한 과세·징수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국외재산에 대한 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창설함
 - 국외재산조서에는 국외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제도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해야 하는 국외재산조서에 적용됨
 - 즉, 최초 국외재산조서의 작성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국외재산에 대하여 작성하게 됨
- 제출의무자는 역년으로 12월 31일에 5,000만엔을 초과하는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로 제출기간은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임
 - 국외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되, 견적가액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거주자에는 비영주자도 포함함
- 국외재산조서에 국외재산의 기재 여부를 따라 국외재산조서에 대한 소득관련 가산세를 달리 부과하고 있음

- 기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상속세에 대한 과소(무)신고가산세를 5% 경감
- 미제출이나 기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과소(무)신고가산세를 5%가중

2) 법인세

가) 후쿠시마부흥재생조치법의 제정에 따른 세제상의 조치

-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원자력재해의 부흥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인 후쿠시마부흥재생특별조치법(가제)에 따른 세제상의 특별조치를 마련한 것임
 - 재해지원세제로서 2011년 12월 7일에 가결·성립된 동일본대지진부흥특별구역법에 따른 법인세 특별조치가 있지만, 이번 조치는 이런 특례조치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우대조치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임
 - 기존 조치의 내용은 <표 III-1>과 같음

<표 III-1> 부흥특구법에 따른 지진 지원세제(법인세특례조치)

A	재투자 등 준비금제도(5년간 소득의 과세이연 및 특별상각)
B	재해피해 고용자 등을 고용한 경우 특별세액공제(급여의 10% 세액공제)
C	사업용 설비 등의 특별상각·특별세액공제
D	개발연구용자산의 특별상각 등

- 이번에 창설되는 특별법은 후쿠시마현 지역에 대한 조치, 피난해제구역에 대한 조치로 나눌 수 있음
 - 후쿠시마현 지역에 대한 조치는 후쿠시마현 전체의 지방공공단체가 부흥추진계획을 직접 작성하고,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인정부흥추진계획에 근거하여 기존 조치(A~D)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기존조치 중 C조치를 201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
 - 피난해제구역에 대한 조치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후쿠시마현으로부터 피해사업자

- 로 확인을 받은 법인에 적용하는 특별조치로 사업용설비 등의 특별상각·특별세액공제 및 피해고용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에 특별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음
- 사업용설비 등의 특별상각·특별세액공제는 기존 조치(C)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적용대상을 확대함
 - 피해고용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에 특별세액공제는 기존조치(B)에 비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을 20%로 함

나) 시험연구비의 특별세액공제

□ 시험연구비 특별세액공제는 <표 III-2>와 같이 한시적 조치를 개정할 예정임

<표 III-2> 시험연구비의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현행법		개정안
총액형 세액공제	항구적 조치	상한액 : 법인세액 × 20% (한시적 조치: 2012년 3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 세액의 20%에서 30%로 할증)	공제상한액의 한시적 조치에 대한 연장 없 음
증가형이나 고수준형 세액공제	한시적 조치 (2012년 3월 31일까지 개시 하는 사업연도에 적용)	상한액 : 법인세액 × 10%	2년간 연장

다) 기타 주요한 조세특별조치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제도 등에 대한 조세특별조치가 2년 연장될 예정임
- 대상이 되는 제도는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중소기업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중소기업자에 대한 소액감가상각자산(취득가액 30만엔 미만의 감가상각자산)의 일시상각, 해외투자 등 손실준비금 등임
 - 해외투자 등 손실준비금 제도의 연장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목적임

- 특정 자산의 환매에 따른 과세특례 중 2011년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장기소유토지 등의 환매특례의 적용시기를 3년 연장하고 환매자산의 범위를 축소할 예정임
 - 현행법에서는 환매자산은 ① 국내에 있는 토지 등, 건물, 구축물이나 기계 및 장비와 ② 철도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중 일부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① 중 토지 등의 범위가 사업소 등의 일정 건축물 등의 부지용으로 사용되는 것(면적이 300㎡ 이상)으로 한정되고 ② 중 대상자산에서 입환(入換)기관차가 제외됨
 - 환매특례는 양도자산을 양도하고 환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의 80%를 과세이연하는 조치임

3)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부분은 2011년 세제개정에서 제안되었다가 개정되지 못한 부분을 2012년 세제개정에 제안한 부분임

가) 급여소득

- 이 제도는 소득세는 2013년분부터 적용되고 주민세는 2014년분(2013년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부터 적용됨

(1) 급여소득공제의 축소

- 종업원에 대한 급여소득공제에 상한액이 설정되어 급여 등의 수입금액이 1,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5만엔이 상한액이 됨
 - 결과적으로 급여 등의 수입금액이 1,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 상당액이 소득공제되지 못하므로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됨

(2) 특정지출공제의 한도설정 및 공제대상 확대

- 특정지출공제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소득자의 실액공제의 기회를 확대함

- 현행법에서는 급여소득자가 특정지출(업무에 직접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연수를 받기 위한 지출 등)을 하는 경우에 급여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특정지출액은 급여소득계산상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함
- 그러나 개정안은 한도를 설정하고 특정지출의 범위를 확대함

□ 특정지출공제의 한도는 <표 Ⅲ-3>과 같이 개정될 예정임

<표 Ⅲ-3> 특정지출공제의 한도

	급여 등의 수입금액	급여소득 계산상 공제 가능한 금액
현행법	제한 없음	특정지출액의 합계액 - 급여소득공제액
개정안	1,500만엔 이하	특정지출액의 합계액 - 급여소득공제액 × 1/2
	1,500만엔 초과	특정지출액의 합계액 - 125만엔

- 특정지출의 범위가 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되어 확대되어 급여소득자의 실액공제의 기회를 확대함
-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취득비
 - 도서구입비, 의복비, 접대비 등의 근무필요경비(합계 65만엔이 한도)

나) 임원의 퇴직소득

- 임원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를 확대함
- 현행법에서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수당 등의 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의 1/2로 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임원으로서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수당 등의 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의 전액이 퇴직소득의 금액이 됨
 - 1/2과세가 폐지됨
 - 개정안은 2013년분 이후에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적용됨

다)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행사 등에 대한 조서제도의 창설

-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신고 누락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국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및 주가연동급여의 지급에 대하여 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창설함
 - 조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내용이 제시되지 아니함
 -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어야 하는 조서에 적용되므로, 2012년에 행사된 스톡옵션 및 지급된 주가연동급여가 보고의 최초대상이 됨
- 보고대상자는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임원이나 종업원인 거주자와 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임원이나 종업원인 거주자임
- 보고대상은 ① 보고대상자가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등을 한 경우와 ② 보고대상자가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의 가격 등에 연동해서 지급액이 결정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임
- 제출기한은 스톡옵션의 행사나 급여의 지불이 있었던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익년 3월 31일까지 제출함

4) 자산과세

가) 상속 증여세

- 젊은 세대로 자산을 조기 이전하고 양질의 주택을 보유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주택취득 등 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조치를 <표 Ⅲ-4>와 같이 확대·연장함

〈표 Ⅲ-4〉 연도별 비과세금액

	2012년	2013년	2014년
특별枠(내진주택 등)	1,500만엔	1,200만엔	1,000만엔
일반枠	1,000만엔	700만엔	500만엔

□ 산림에 대한 상속세 납세유예제도를 창설하고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완화함

나)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 후쿠시마부흥재생특별조치법안의 제정에 따른 세제상의 조치임

- 피난구역 내의 토지 및 가옥에 대한 고정자산세 등을 과세면제함
- 과세면제구역으로부터 제외된 구역에 대한 고정자산세 등을 감액조치(3개년도 분)함

□ 신축주택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감액조치를 2년 연장함

□ 고정자산세 등의 부담조정조치는 3년간 연장하고 주택용지특례(특례비율 1/6 등)도 계속하지만, 주택용지특례를 경과적인 조치로 하여 2014년에는 폐지함

5) 환경관련세제

□ 환경관련세제로는 자동차중량세, 자동차취득세, 지구온난화 대책세로 나눌 수 있음

□ 자동차중량세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고, ‘환경차량감세’에 따른 경감조치를 연장할 예정임

- 자동차검사증의 교부 시점에 환경성능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동차는 2012년 5월 1일 이후, 원칙세율(本則稅率)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동차는 차등세율(間稅率)을 부과할 예정임

- 13년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하고 인하를 함

- 지구온난화대책을 추진, 자동차산업의 기술적 우위성의 확보와 향상의 관점에서 행해지는 ‘환경차량감세’에 대해서는 연비기준 등을 개정하고 자동차중량세에 대해서는 특별히 환경성능이 우수한 자동차에 대해서 경감조치를 확충하여 2015년 4월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 자동차취득세는 ‘환경차량감세’에 대한 연비기준의 개정과 더불어 환경성능이 지극히 우수한 자동차의 부담경감에 중점을 두어 2015년 4월까지 3년 연장함

-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약 9할을 차지하고 있는 CO₂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세'를 도입함
 - 화석연료를 과세기준으로 하는 석유석탄세에 CO₂ 배출량에 따른 세율을 추가하여 부과함
 - 추가되는 세율은 ① 원유 및 석유제품 760엔/kl, ② 가스상태화수소 780엔/t, ③ 석탄 670엔/t임
 - 개정안은 2012년 10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고 2016년 3월 31일의 기간까지는 경과조치가 시행될 예정임

5. 중국

가. 중국의 개인소득세제 개정조치

[조세동향 11-15]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⁵³⁾는 2011년 6월 30일에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이번 개정은 제6차 소득세법 개정임
- 개정된 소득세법의 주요 내용은 월표준공제액의 인상,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구간의 축소(9단계에서 7단계로 축소), 근로소득 최저 과세구간 세율의 인하(5%에서 3%로 인하), 사업소득 과세구간 금액 인상이며, 원천징수일도 연장함
 - 원천징수일은 소득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7일이었으나,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로 연장됨
 - 이번 법률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됨

53)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약 1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상무위원회는 사실상의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을 수정할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소득세 납세자 및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고소득자는 더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납세자는 현재 8,400만명인 납세자가 2,4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1) 월별 근로소득 세율체계

- 개정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월별 근로소득 과세액에 따라 7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게 됨
 - 새로운 세율체계는 최저 3%에서 최대 45%로 7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지님

〈표 III-5〉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단계

(단위: 위안)

기존 과세체계			새로운 과세체계		
단계	월과세소득	세율	단계	월과세소득	세율
1	500 이하	5%	1	1,500 이하	3%
2	500 초과 2,000까지	10%	2	1,500 초과 4,500까지	10%
3	2,000 초과 5,000까지	15%	3	4,500 초과 9,000까지	20%
4	5,000 초과 20,000까지	20%	4	9,000 초과 35,000까지	25%
5	20,000 초과 40,000까지	25%	5	35,000 초과 55,000까지	30%
6	40,000 초과 60,000까지	30%	6	55,000 초과 80,000까지	35%
7	60,000 초과 80,000까지	35%	7	80,000 초과	45%
8	80,000 초과 100,000까지	40%			
9	100,000 초과	45%			

- 월과세소득은 월총소득에서 3,500위안(과세면제한도)과 추가공제(extra deduction)를 차감하여 계산함
 - 추가공제(extra deduction)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해외에서 근무하는 중국거주자에게 적용됨

2) 연간 개인사업소득의 세율체계

- 개인이 제조업이나 다른 사업활동(개인사업자, 파트너십의 개인 파트너 등)을 하는 경우에는 연단위의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과세됨
 - 연단위의 사업소득은 연간 총수익에서 연간 원가, 비용과 손실을 공제하여 계산됨
-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소득은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5%에서 35%)을 유지 하지만 과세구간의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낮아지게 됨

〈표 III-6〉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단위: 위안)

기존 과세체계			새로운 과세체계		
단계	연과세소득	세율	단계	연과세소득	세율
1	5,000 이하	5%	1	15,000이하	5%
2	5,000 초과 10,000까지	10%	2	15,000 초과 30,000까지	10%
3	10,000 초과 30,000까지	20%	3	30,000 초과 60,000까지	20%
4	30,000 초과 50,000까지	30%	4	60,000 초과 100,000까지	30%
5	50,000 초과	35%	5	100,000 초과	35%

6. 호주

가. 호주의 탄소세 관련 동향

[조세동향 11-16]

1) 호주 정부의 탄소가격결정방식을 발표

- 호주 정부는 2011년 7월 10일 탄소가격결정방식을 발표함
 - 탄소가격결정 시스템은 호주 정부가 추진해 온 클린에너지 미래정책패키지(Clean Energy future policy package)의 일환임
 - 클린에너지 미래정책패키지(Clean Energy future policy package)는 탄소가격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토지이용정책을 증가시켜서 오염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탄소가격은 탄소오염을 줄이는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될 것임
- 탄소가격결정방식은 단계적으로 고정가격결정방식에서 변동가격결정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임
 - 고정가격결정방식(fixed price mechanism)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등가액(CO₂-e)에 대하여 일정액을 부과하는 배출거래구조(emissions trading scheme, ETS) 방식을 따름
 -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배출거래구조(emissions trading scheme, ETS)를 따르며 호주에서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약 5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함
 - 변동가격결정방식은 배출거래(emissions trading scheme, ETS)에 연동하여 탄소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임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고정가격결정방식에 의해 탄소가격을 결정하는 기간 동안에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이산화탄소등가액과 교환할 수 있는 고정가격허가권(fixed price permit)을 정부로부터 구매하여야 함

- 고정가격결정방식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등가액 1톤당 23호주달러를 부과할 예정임
- 최초 3년 동안 탄소가격을 매년 2.5%씩 인상하면서 고정가격결정방식을 유지함
- 고정가격결정방식에 의해 탄소가격을 결정하는 기간 동안에 국제허가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국내허가권을 국외에 판매할 수도 없음

□ 변동가격결정방식은 시장에서 탄소가격을 결정하게 되지만 최초 3년 동안은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할 것임

- 최저가격은 15호주달러, 최고가격은 20호주달러임
- 기업들은 국내허가권을 해외에 판매할 수 없음
- 국제허가권은 연동가격결정방식으로 탄소가격을 결정하는 기간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2020년까지는 50%까지만 허용됨

□ 탄소세가 적용되는 산업에는 고정에너지(stationary energy) · 산업공정(industrial process) · 탈루성 배출원(fugitive processes, 폐쇄석탄광산은 제외) · 비전통배출원(non-legacy waste) · 수송부문(일부제한) 등과 같은 산업들이며, 교토의정서에 따른 6개의 온실가스 중 4종류의 온실가스가 부과대상임

- 농업과 토지의 사용에 대한 탄소배출은 탄소세 부과가 배제됨
- 탄소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알루미늄용해에 의한 과불화탄소임

2)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탄소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

□ 호주의 새로운 탄소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인상되는 가격인상을 상쇄하기 위하여 호주 정부는 2단계로 과세면제한도를 인상할 계획임

-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과세면제기준 및 산출세액은 <표 II-9>와 같음

〈표 III-7〉 세율 및 산출세액(2011-2012)

과세소득(AUD)	산출세액(AUD)
0~6,000	0
6,001~37,000	0 + 6,000 초과액의 15%
37,001~80,000	4,650 + 37,000 초과액의 30%
80,001~180,000	17,550 + 80,000 초과액의 37%
180,001+	54,550 + 180,000 초과액의 45%

- 주: 1. 위 세율에는 의료비부담금과 홍수부담금 1.5%는 포함되지 않음
 2. 저소득 소득공제의 최대액은 1,500호주달러임
 3. 유효 과세제외 한도는 16,000호주달러임

- 2012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과세면제기준 및 산출세액은 〈표 II-10〉과 같음

〈표 III-8〉 세율 및 산출세액(2012-2015)

과세소득(AUD)	산출세액(AUD)
0~18,200	0
18,201~37,000	0 + 18,200 초과액의 19%
37,001~80,000	3,572 + 37,000 초과액의 32.5%
80,001~180,000	17,547 + 80,000 초과액의 37%
180,001+	54,547 + 180,000 초과액의 45%

- 주: 1. 위 세율에는 의료비부담금과 홍수부담금 1.5%는 포함되지 않음
 2. 저소득 소득공제의 최대액은 445호주달러임
 3. 유효 과세제외 한도는 20,542호주달러임

- 〈표 II-9〉에 의하면 2011-2012과세연도에 호주 거주자는 과세소득의 6,000호주달러까지는 과세면제해 왔으나, 〈표 II-10〉에 의하면 2012-2013과세연도부터 2014-2015과세연도에는 과세면제한도를 18,200호주달러로 인상할 계획임
- 2010-2011과세연도에 저소득 보조금(low-income rebate)은 1,500호주달러이고 30,000호주달러 초과 과세소득 1달러당 4센트씩 면제액이 감소함

- 2012-2013과세연도부터 2014-2015과세연도에 저소득 보조금(low-income rebate)은 445호주달러이고 37,000호주달러 초과 과세소득 1달러당 1.5센트씩 면제액이 감소함
- 2015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과세면제기준 및 산출세액은 <표 II-11>과 같음

<표 II-9> 세율 및 산출세액(2015-2016)

과세소득(AUD)	산출세액(AUD)
0-19,400	0
19,401-37,000	0 + 19,400 초과액의 19%
37,001-80,000	3,344 + 37,000 초과액의 33%
80,001-180,000	17,534 + 80,000 초과액의 37%
180,001+	54,534 + 180,000 초과액의 45%

주: 1. 위 세율에는 의료비부담금과 홍수부담금 1.5%는 포함되지 않음
 2. 저소득 소득공제의 최대액은 300호주달러임
 3. 유효 과세제외 한도는 20,979호주달러임

- 2015-16과세연도에는 과세면제기준을 인상하여 기존에 과세면제기준인 18,200호주달러를 19,400호주달러로 인상할 계획임
- 2015-2016과세연도의 저소득 보조금(low-income rebate)은 300호주달러이고 37,000호주달러 초과 과세소득 1달러당 1센트씩 면제액이 감소함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제2호

2011년 12월 23일 인쇄
201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조 원 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